

M45-18 / 2002. 2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18호 (2002년 2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1. 일본 쌀 관세화 전환의 배경, 효과, 문제 3
2. 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15
3.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2) 20
4. 일본의 주요목재 단기 수급전망 37
5. 중국 2002년 ‘농촌공작회의’ 개최 43
6. 중국 국무원 축산업발전 보고서 승인 50
7. 미국 2002년 농업법 제정 동향 52
8. 미국 양돈경영 보험프로그램 도입 71
9. 남아시아에서의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영향 73
10. EU의 가격지지 및 직접지불정책 동향 77
11. EU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증가 86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 대만의 WTO 가입과 농업문제 91

III. 농산물무역 정보

1. 호주 돈육업계 수출확대 도모 99
2. 브라질 2001년 농산물수출 대폭 증가 101

IV. 세계 식료수급 정보

-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2. 1) 107



농업 농정 동향

일본 쌀 관세화 전환의 배경, 효과, 문제
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2)
일본의 주요목재 단기 수급전망
중국 2002년 '농촌공작회의' 개최
중국 국무원 축산업발전 보고서 승인
미국 2002년 농업법 제정 동향
미국 양돈경영 보험프로그램 도입
남아시아에서의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영향
EU의 가격지지 및 직접지불정책 동향
EU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증가

일본 쌀 관세화 전환의 배경, 효과, 문제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쌀 관세화를 실시하고 있다. 높은 관세상당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 이후에도 수입이 계속되는 MMA에 의해 쌀 과잉을 초래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일본의 쌀 관세화의 배경, 고액의 관세상당치 산정방법, 그리고 관세화 이후 문제 등을 점검한다.

1. 관세화 특례조치의 적용

WTO 협정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농산물에 대해서만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제한 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1993년 12월의 UR 협정에서 수입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경조치를 모두 관세화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기준기간(UR 협상을 시작한 1986년에서 1988년까지 3년간)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실시기간인 초년도(1995년)에 국내 소비량의 3%, 최종년도(2000년)에 5%의 수입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합의되었다. 이것이 MMA이다.

또 관세화에 대해서는 특례조치(Special Treatment)가 설정되었다. 기초적 식료로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수출

상대국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조건에서 협정실시기간 중 관세화 유예가 인정된 것이다.

그 요건이란 다음과 같다!

- ① 기준기간(1986~88년)에 당해 상품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어야 한다.
- ② 기준기간에 당해 상품에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 ③ 효과적인 생산조정이 실시되고 있어야 한다.

선진국 중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품목은 사실상 일본의 쌀뿐이다. 일본은 이에 근거하여 쌀에 대해서 MMA 수량을 1995년에 3%에서 4%(백미 37.9만톤)로, 2000년에 5%에서 8%(백미 75.8만톤)로 인상한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관세화를 유예한 것이다.

또, 협정실시기간 중에 관세화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MMA의 연간 증가폭은 연간 국내소비량의 0.8%²(백미 7.6만톤)에서 절반인 0.4%³(3.8만톤)로 감소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2. 관세화 내용

일본은 1998년 12월 17일 농림수산성(中川 昭一 장관), 자민당(櫻井 新 농림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농협(原田 睦民 전중회장) 등 3자 합의로 쌀 관세화를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
- 1)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1항의 (a), (b), (c).
 - 2) 특례조치에 의해 1995년에 기준년도 국내 소비량의 4%에서 2000년에 8%로 인상되어 가는 경우의 연간 증가폭은 0.8%(백미 7.6만톤)이다.
 - 3) 통상의 MMA는 95년에 기준년도 국내 소비량의 3%에서 2000년에 5%를 수입하는 경우의 연간 증가폭은 0.4%(백미 3.8만톤)이다.

3자간에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관세화 시기 : 1999년 4월 1일
- ② 관세 설정방식 : 종량세
- ③ 관세 부과액 : 1999년은 351.17엔/kg, 2000년 이후 341.00엔/kg
- ④ MMA 수입쌀은 국영무역 유지

3. 관세화 전환배경

3.1. MMA 수입쌀 증가가 부담

UR 타결이 이루어진 1993년은 일본에서 과거 전례가 없는 작황지수 75라는 쌀 흉작으로 200만톤 가까이 긴급수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1997년까지 4년 연속 풍작이었다. 국산쌀 재고는 계속 늘어나서 1997 미곡년도말(1998년 10월)의 재고는 380만톤(국내 소비량의 약 4할)에 이르게 되었다. 재고감소를 위하여 생산조정을 1998년, 1999년에 96만ha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5년부터 식량청에 의해 MMA 수입쌀이 들어왔다. 과거 3년간(1995-97 미곡년도)의 MMA 수입쌀 154만톤은 가공용 59만톤과 주식용 8만톤, 기타 북한,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해외원조에 46만톤을 사용하였다. 또, 1998년 10월 시점에 42만톤이 재고로 남아있었다. 이와 같이 MMA 수입쌀의 처리가 이미 한계에 다가오고, 더구나 그것이 증대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만약, 2001년 이후도 관세화 유예를 원한다면 더욱이 MMA 수량을 추가한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 농업의 현상에서 보면 이것은 한도를 초과한 부담이 되어 선택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관세화로의 이행이 선택사항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표 1 일반 MMA 수입쌀의 용도, 1996-98 미곡년도⁽¹⁾

단위: 현미만톤, %

수입량	154	100
가공용	59	38
주식용	8	5
원조용 ⁽²⁾	46	39
재 고 ⁽³⁾	42	27

주: (1) 미곡년도는 전년 11월에서当年 10월까지

(2) 원조용은 북한, 인도네시아에 지원

(3) 재고 42만톤 가운데 19만톤은 사료용으로 비축

자료: 「일본농업신문」 1998년 12월 3일자

이 당시, ①이미 일본의 쌀정책이 1997년 12월에 ‘새로운 쌀정책’으로 전환하여 1998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었던 것, ②MMA 수입쌀의 일부(10~20%)가 ‘SBS(매매동시입찰) 방식’으로 수입되어 이로 인해 국산쌀과 경합할 수 있는 수입쌀의 관세액 수준을 추정할 수 있게 된 것 등도 관세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초가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3.2. 쌀 정책 전환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쌀정책 중 도작경영안정대책은, ①정부의 쌀정책 개입은 공공비축미(150~200만톤)의 유지에 한정하고, 가격지지는 관여하지 않고 미가는 국내 수급관계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②기준가격은 각 품종별 3년간 시장가격의 평균으로 하며,当年산 쌀 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 그 차액의 8할을 보전하며, ③보전자금에 대해서는 생산자도 그 일부를 매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종래의 쌀정책, 즉 정부미의 매입가격으로 쌀 가격을 지지하고, 이에 따라 쌀 농가의 소득보장도 이루어진다는 정책에서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동시에 이 대책은 가격에 의한 지지를 배제하고, 생산에서 분리된 소득 보장의 방향을 촉진한다는 UR 협정의 방향에도 부합하고 있다.

또, 도작경영안정대책은 만약 장래 관세화에 대비하여 쌀 수입이 일반화된 경우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미 도작경영대책의 도입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쌀 관세화가 고려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3. 고관세에 의한 장기적인 국경보호의 가능성

일본 정부는 MMA 수입의 일부를 SBS(매매동시입찰) 방식에 의하여 수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민간의 수입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매입한 도매업자가 1매의 입찰용지에 수입가격과 매입가격(정부측에서 보면 매도가격)을 기입하여 그 차액이 큰 쪽에 수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1998년도에는 12만톤(MMA 수입쌀 63.2만톤의 19%)이 수입되었다. 평균수입가격은 백미 톤당 8만~10만엔, 매도가격은 24만~27만엔, 차액은 16만엔(1kg당 160엔) 전후이다.

표 2 매매동시입찰방식(SBS)에 의한 쌀 수입량, 1995-98년

단위: 1,000톤, %

	중국	미국	호주	태국	합계
1995	2.4 (22)	5.7 (53)	1.9 (18)	0.2 (2)	10.7 (100)
1996	5.1 (23)	14.1 (64)	1.2 (6)	0.4 (2)	22.0 (100)
1997	13.8 (25)	34.7 (63)	3.2 (6)	0.9 (2)	55.1 (100)
1998	62.0 (52)	36.5 (30)	14.5 (12)	5.3 (4)	120.0 (100)

자료: 食糧廳 「わが國の米麥をめぐる國際狀況」 1998. 11
식량청 무역업무과

이 차액 1kg당 160엔 수준을 일본 쌀과 경합할 수 있는 외국산 쌀이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관세수준으로 간주하면, 현행 UR 협정에 근거하여 연 2.5%의 인하를 전제로 한 경우, 1kg 350엔 전후의 초기관세가 160엔 수준까지 가는데 25년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관세화로 이행하여도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관세가 상당기간 국경보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MMA를 다시 증대하는 ‘추가적 양허’를 포함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관세화로 전환하는 편이 일본 농업에 있어 유익한 것이며, 더구나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할수록 유리하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4. 관세상당치 설정방법

관세화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관심은 관세상당치를 과연 얼마나 높게 설정할 수 있는가, 또 종가세가 유리한가 종량세가 유리한가에 있었다.

관세상당치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로서 계산한다. WTO 농업협정에는 ‘기준기간의 수입가격과 대표적인 도매가격과의 차이’로서 계산한다고 되어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①기준기간은 1986~88년이다.

4) 관세상당치 설정근거는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부록, 즉 ‘부속서 5의 6항 및 10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관세상당치 산정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②국제가격은 기준기간에 실제로 수입실적이 있으면 보험료·운임 등을 포함한 수입가격(CIF)으로 하고, 수입실적이 없거나 적절치 않으면 인접국의 수입가격이나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에 수입국이 부담하는 보험료, 운임, 기타 예상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③국내가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대표적인’ 도매가격으로 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가격 예상치를 사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관세상당치 산정을 보면, 먼저 국제가격은 당시 가공용으로 수입 실적이 있었던 태국산 인디카계 쌀(A1 스페셜)을 사용하였다. 가공용 쌀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WTO 협정에는 ‘기본적으로 관세품목분류(HS)의 4자리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HS 4자리의 쌀에 대한 분류는 단순한 ‘쌀’이며, 백미·현미·쇄미·겨 등의 구분은 없다. 따라서 수입가격의 산정에서 쌀을 포함하여 수입가격의 평균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기준가격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가격은 도매가격 상급미를 사용하였다. 상급미가 실제 기준기간의 국내 소비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가격이 ‘대표적인’ 도매가격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WTO 농업협정 근거하여 국제가격은 낮게, 국내가격은 높게 산정하여 1,000% 이상의 고율 관세상당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적용방식에 있어서 종가세로 할 것인가, 종량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관세율 1,000%에 대한 미국 등의 수출국에서 부정론이 제기되자 일본은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하였다. 종량세는 수입가격의 하락시에 유리하며, 관세율 1,000%에 대한 미국 등의 반발에 대응하면서, 수입저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었다.

종량세를 선택한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다. 중국은 단립종을 생

산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인건비·수송비가 싸다. 앞으로 기술진보와 기반정비 등에 의한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으로 향후 저가격 수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기준기간 관세상당치는 kg당 402엔이며, 이것을 증가세로 환산하면 1,256%에 상당한다. 이것을 실시기간 6년간 15%를 감축하여 계산하여 적용한 것이 kg당 1999년 351엔, 2000년 341엔이다.

표 3 관세상당치 산정근거

기준년도	국제가격(A) 수입CIF 가격평균	국제가격(B) 백미도매가격 (상급미) ⁽¹⁾	B-A
1986년도	29엔/kg	438엔/kg	409엔/kg
1987년도	31엔/kg	435엔/kg	404엔/kg
1986년도	37엔/kg	429엔/kg	392엔/kg
3년 평균	32엔/kg	434엔/kg	402엔/kg

주: 기준년도의 관세상당치(402엔/kg)를 증가세로 환산하면 1,256%임.
자료: 농림수산성

5. 관세화의 효과

쌀 관세화의 효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MMA 수입감소, ②장기적인 수입저지효과, ③WTO 뉴라운드에서 일본의 입지강화 등이다.

먼저, 관세화 특례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고 관세화로 전환한 것은 MMA를 최대 7만 6000톤까지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일본은 쌀 관세화 특례조치에 의해 1995년 국내소비의 4%에 상당하는 37만 9000톤을 수입, 그 후 매년 0.8%씩 증가, 2000년에는 75만 8000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표 4 쌀 MMA 수량 : 관세화에 의한 수량감소효과

단위: 백미 만톤

	99년 4월부터 ⁽¹⁾ (A)	지금까지의 약속 ⁽²⁾ (B)	차 (A-B)
1999년도	64.4	68.2	-3.8
2000년도	68.2	75.8	-7.6

주: (1) 관세이행에 의한 증가폭의 축소에 의한다.

(2) UR 협정의 특례조치에 근거한 약속이다.

특례조치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는 MMA 증가율은 0.8%에서 0.4%로 감소한다⁵⁾.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한다면, 1999년 MMA수입량은 68만 2000톤에서 64만 4000톤으로 3만 8000톤 감소, 2000년은 75만 8000톤에서 68만 2000톤으로 7만 6000톤 감소하며, 또 2001년부터 CMA가 68만 2000톤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쌀을 조기관세화함으로써 감소하는 MMA수입량은 1999년 3만 8000톤, 2000년 7만 6000톤, 2001년 이후 매년 7만 6000톤에 달한다. 현재의 재고 수준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MA의 지속적인 유지는 과잉요인이 항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수입저지 효과이다. 고액 관세를 설정함으로써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현행 방식으로는 수입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실제 관세상당치를 지불하고 수입된 쌀은 1999년 225톤, 2000년 98톤이며, 이것도 상업용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시식용이나 시험용 등으로 수입되었다. 그래서 관세화에 의한 쌀 수입은 고액 관세에 의하여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차단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살펴보자.

5) WTO 농업협정 부속서5 Section A 2항

1kg당 160엔 수준을 일본쌀과 경합할 수 있는 외국산 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관세수준으로 간주하면, 현행 UR 협정에 근거하여 연 2.5%의 인하를 전제로 한 경우, 1kg 351엔 전후의 초기관세가 160엔 수준까지 가는데 25년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관세화로 이행하여도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액 관세가 상당기간 국경보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략적으로 차기협상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WTO의 이념에 반하면서 관세화 거부에 집착하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대일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쌀 문제를 사전에 종결함으로써 차기협상에서 국영무역, MMA수량, 국내보조 등의 쟁점에서 실리를 노리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표 5 쌀 수입량과 관세상당치

	수입량(톤)	관세상당치(엔/kg)
1999	225	351.17
2000	98	341.00

자료: 식량청 무역업무과

표 6 SBS 수입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 1998년

단위: 엔/톤

일시	수출국	종류	수량(톤)	매입가격	매도가격	차
1998년 제4회	중국	멥쌀정미단립	14,670	79,900	247,000	167,100
1998년 제4회	미국	멥쌀정미단립	1,310	105,500	273,000	167,500
1998년 제4회	미국	멥쌀정미단립	2,940	102,800	271,400	168,600
1998년 제3회	호주	멥쌀정미중립	1,060	98,200	258,800	160,600

자료: 식량청 무역업무과

즉, 일본 정부는 관세화에 따른 실리를 얻으면서 차기협상에서 쌀 관세화의 쟁점에서 훌가분하게 벗어나 다른 품목의 관세율 교섭, 농업보조금 등 국내 농업보호문제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실리를 선택한 셈이다.

일본은 차기협상에서 국토·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토대로 관세율 등 시장접근, 식량안정보장정책, 쌀 경영안정대책, 중산간지역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국제적인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EU 및 개도국과 연대하여 미국 등 수출국에 대항한다는 전략이다.

6. 관세화의 문제점과 WTO 차기협상 과제

일본은 쌀 관세화로 전환함으로써 MMA 수입 감소를 비롯하여, 고액 관세상당치 설정에 의한 장기적인 수입저지효과, WTO 차기협상에서의 입지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화 이후 1999년도와 2000년도 수입상황을 보면 확실히 수입차단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폭을 현행과 같이 연 2.5%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차기협상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계산상으로는 관세상당치를 연간 2.5%씩 감축하는 경우 25년간은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차기협상에서 관세상당치 감축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협상에서 관세 감축률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그 다음은 관세화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MMA 7.2%(68.2만톤)의 처리문제이다. 최근 쌀 과잉 요인 중의 하나가 MMA 수입쌀이다. 그래서 MMA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재 일본은 MMA 수준을 3~5% 수

준으로 회복하느냐가 두 번째 과제이다.

또, 기준년도인 1986~88년을 최근년도로 변경하여 기준소비량의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나 이것이 세 번째 과제이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이상 3가지 점을 2000년 12월 WTO 사무국에 제출한 차기협상 제안서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식료공급은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식료공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에 강구해야 할 대책의 기본적인 내용, 근거법령, 실시절차 등을 지난 2001년 9월에 제시하였다⁶⁾. 이를 소개한다.

우선, 식료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한지 못한 요인으로는, ①국내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대홍작, 돌발적인 사건·사고에 따른 농업생산 혹은 유통 혼란, 안전성이라는 면에서의 식품판매 규제, ②해외(주요 생산국·수출국)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대홍작, 항구의 파업 등에 따른 수송장해, 지역분쟁 혹은 돌발적 사건·사고 등에 따른 농업생산 혹은 무역의 혼란, 수출규제, 안전성이라는 면에서의 대일본 수출규제 등이다.

1. 평상시의 대처

일본은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 식료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의 대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다음 사항을 강구하고 있다.

(1) 농지 및 경영주체 확보, 농업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식료자급률 제고, 비상시를 대비한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

6) 식료 공급이 양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강구해야 할 대책을 제시한 것이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

식료공급 능력의 확보 및 향상을 도모한다.

(2) 식료 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비축제도를 운용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다.

(3)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식료수급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체제를 확립하고, 평상시 식료공급량을 예측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각종매체를 통한 정보발신 기능을 강화한다.

(4) 식료사정, 비상시 대책 등의 방법에 대해 국내 각계 각층의 이해를 촉진한다.

2. 비상사태 수준별 유형

예측하지 못한 비상사태의 심각도에 따라 단계 0, 단계 1, 단계 2 등 3단계로 설정한다.

표 1 비상 수준별 유형

구분	사태의 심각도
단계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특정 품목의 수급이 부족하여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단계 1 이후의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의 공급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특정 품목의 수급이 부족하여,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품목의 공급이 평소 공급을 2할 이상 하회한다고 예측되는 경우 기준
단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의 공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인당 1일 공급열량이 2,000kcal를 하회한다고 예측되는 경우를 기준

3. 비상시 대책의 체제정비와 대책

3.1. 비상시 대책의 체제정비

(1) 농림수산성의 체제정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단계 0) 경우, 농림수산성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농림수산성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농정국 등에서도 체제를 정비한다.

(2) 정부 일체가 된 체제정비

농림수산성 장관은 단계 1, 단계 2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총리에게 이를 신고한다. 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단계의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3.2. 단계 0인 경우 대책

단계 1 이후의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보수집, 제공 등의 초동적·예방적 대책을 실시한다.

(1) 식료공급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예측하지 못한 요인에 즉시 대응한 정보의 수집·연락체제를 강구, 각종 매체를 통해 적기에 적절한 광고활동, 국민·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의 이해와 노력을 촉구한다.

(2) 비축 활용과 수입 확보

쌀, 소맥, 대두와 사료곡물에 관해 비축의 계획적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수입다각화를 도모하고,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의

수입 확보를 도모한다.

(3) 식품산업사업자 등의 대응강화

생산자 등에 대해 농산물의 조기출하 혹은 규격외 제품의 출하 촉진을 요청한다. 또한 식품사업자에 대한 폐기 억제, 규격외 제품의 유통 등의 촉진을 요청한다.

(4) 가격동향 등의 조사·감시, 관계사업자 지도 등

식료 및 생산자재의 가격 동향 등을 조사·감시한다. 사태의 상황에 맞추어 매점매석과 가격인상의 방지, 국내 농산물의 출하량 확보, 관계자의 자주적인 대처를 촉진한다.

3.3. 단계 1인 경우 대책

단계 0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규제조치를 실시한다.

(1) 긴급 증산

가능한 한 식료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증산 가능한 것에 관해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표준가격 등을 설정한다.

(2) 적정한 유통의 확보

식료 등의 적정한 유통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매도, 수송, 보관에 관한 지시 등을 한다.

(3) 가격 규제

식료 등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에 의해 기준가격 등을 설정한다.

3.4. 단계 2인 경우 대책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 법률에 의해 열량확보를 우선으로 한 농업생산으로 전환하며, 식료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할당, 배급 및 물가통제를 실시한다.

(1) 생산전환과 농지 이외의 토지 이용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비식용작물 등에서 열량효율이 높은 작물로 생산전환을 실시한다. 기존농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열량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농지 이외의 토지를 이용한다.

(2) 할당, 배급과 물가통제 실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과 정부의 수급 파악에 따라 식료는 할당 및 배급을 통해 공급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가격을 지정한다.

(3) 석유 공급이 감소할 경우의 대응책

석유의 대폭적인 공급부족이 생기는 경우, 석유수요적정화법에 준하여 농림어업자에게 우선적인 공급 확보, 공급의 알선을 실시한다. 또한, 석유 공급이 대폭 통제되고, 연료·비료·농약 등의 공급이 감소될 경우는 농법 전환 등으로 대응한다.

資料: http://www.maff.go.jp/sogo_shokuryo/manual/dai3kau/ichiran.thm에서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2)

1. 일본 · 중국간 농산물 세이프가드문제 타결

과, 생표고, 골풀 등 3 품목 세이프가드 문제에 대해서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협의 결과, 2000년 12월 21일 일본의 타케베(武部) 농림수산업 장관, 히라누마(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의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장관간의 합의로 타결되었다.

1.1. 일본 · 중국간 협의결과

일중 쌍방은 과 등 3품목에 관한 무역계획을 조속히 구축하고, 농산물 무역협의회를 중심으로 3품목의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농산물무역협의회 설치

양국은 생산자 등 폭넓은 관계자가 참가하는 협의회를 설치, 3품목의 수요, 품질, 생산,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생산, 수요 및 무역상황의 신속 · 정확한 파악과 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식부, 생산 및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한다.

(2) 정부간 협력강화

양국 정부는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

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업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무역을 함께 유지하고, 위법무역을 단속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한다.

(3) 농산물무역 전반에 관한 협의메커니즘

양국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양면을 통해 현재의 협의메커니즘의 기초 위에 농산물무역 전반에 관한 협력에 대해 검토, 강화한다.

이상으로,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양국은 의견일치에 근거하여 일본측은 현재 조사중인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또 중국측은 자동차 등 3품목에 관한 보복조치인 특별관세조치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표 1 일중 농산물세이프가드 타결 경과

일 정	내 용
2000년 11월 24일	○ 일본 농림수산업성 장관, 6품목(과, 토마토, 피망, 양파, 생 표고, 골풀)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요청
12월 22일	○ 일본 과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개시
2001년 3월 23일	○ 일본 정부 실태조사 결과공표
3월 30일	○ 일본 농림·경제산업·재무등 3장관, ‘세이프가드 잠정조 치 발동을 위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한다’ 고 합의
4월 6일	○ 일본, 세이프가드 관계각료 간담에서 잠정조치발동에 대 해 관계각료의 이해를 얻는다
동일	○ 일본 관세·환율 등 심의회 특수관세위원회가 잠정조치 발동의 기본원칙에 대해 자문·답신
4월 10일	○ 일본 3장관 합의로 잠정조치의 발동 및 내용을 결정, 각 의에 보고
4월 13일	○ 일중 부장관급 협의(북경)
4월 17일	○ 일본 과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정 령을 각의에서 결정
4월 20일	○ 일본 잠정조치에 대해 WTO 통보
4월 23일	○ 일본 동 정령시행(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6월 22일	○ 중국, 일본의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해 현행 관세 율에 100%의 특별관세 징수개시
7월 3일, 4일	○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과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 가드 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국장급)(북경)
9월 24일, 25일	○ 과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관민협의(북경)
10월 8일	○ 일본 小泉 수상과 중국 朱鎔基 총리 회담(북경) (세이프가드문제를 협의로 해결하는데 의견일치)
10월 17일	○ 일본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 협력부 장관과의 회담(상해) (조속히 다양한 형식의 협의 개최를 합의)
10월 21일	○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江澤民 국가주석 회담(상해) (관계자간 협의로 조기해결을 심화에 의견일치)

표 1 일중 농산물세이프가드 타결 경과(표 1 계속)

일 정	내 용
10월 21일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江澤民 국가주석 회담(상해) (관계자간 협의로 조기해결을 심화에 의견일치)
10월 25일	○일본 세이프가드관계 각료회의(중국과의 협의를 조기에 재개, 협의 해결을 요구하는 데 의견일치)
10월 31일	○일본 세이프가드 정부조사에서 주요지표의 개요공표
11월 1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과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1월 7, 8일	○과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관민협의(동경)
11월 8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기한
11월 12일	○일본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작부 장관과의 회담(도하) (쌍방이 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협의 해결을 쌍방이 합의)
11월 21일	○일본 과 등 3품목의 수입동향 모니터결과 공표(제1회, 이후 매주 공표)
11월 22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과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과장급 협의(북경)
11월 30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과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2월 7, 8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과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2월 11일	○일본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작부 장관의 회담(북경)
동일	○중국 WTO가맹
12월 19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과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차관급 협의(도쿄)
12월 20일	○일본 세이프가드 관계각료회의(일중합의안 등 정부차원의 최종적인 기본방침에 대해 합의)
12월 21일	○일본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 대외무역경제협작부 장관간에 과 등 3품목의 질서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공통인식에 합의
동일	○일본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기한

2. 일본의 2002년도 채소관련 예산개요

일본은 수입채소 증가,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재 ‘채소의 구조개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 채소대책 관계예산은 2001년도의 3.5배 규모로 결정되었다.

표 2 채소 구조개혁대책 예산 개요

단위: 백만엔

사 항	2001년예산액	2002년 예산안	개 요
수입급증농산물대응 특별대책사업(채소)	0	8,000	○대상 : 파, 토마토, 양파 등 감시대상품목 ○내용 :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종합대책
(신규)			
하드	0	6,600	
소프트	0	1,400	
채소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신규)	0	4,600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 한 상기 메뉴에 추가로 실 시하는 새로운 특별대책
생산진흥종합대책 사업(채소)(확충)	3,151	3,687	○대상 : 기타 채소 ○내용 : 생산·유통대책
하드	2,766	3,352	
소프트	385	335	
가격안정대책	4,749	13,544	○가격하락시 가격차 보전금 지급 등 세이프티네트 등
계약채소안정 공급사업(신규)	0	7,194	
기술개발 등(확충)	1,129	1,290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 발, 조사 등
합 계	9,029	31,121	

주: 상기 외에 ‘채소생산기반정비특별대책’(100억엔)을 신설

2.1. 수입급증 농산물대응 특별대책사업(채소)

2.1.1. 취지

채소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산·유통 구조개혁에 대응하여 과등을 중심으로 국산 채소의 과감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내 산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 토마토, 피망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감시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책을 창설, 산지개혁계획을 책정하고, 추진해야 할 전략·목표를 명확히 한 산지에 대해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국산 채소가 소비자·실수요자에 지지되어 수입 채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지를 육성한다.

또, 채소는 영양·기능면에서 식생활의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소경향에 있기 때문에 건강, 교육, 소비자 계도 등 3면의 관점에서 관민이 연대하여 채소 소비개혁대책을 전개한다.

2.1.2. 사업 내용

감시대상품목(과, 토마토, 양파, 피망, 마늘, 가지 등) 및 이러한 품목으로 전환한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산지개혁계획 수립

소프트사업

① 산지의 기본방침책정

② 비용절감, 계약거래 추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목표수립

(2) 생산·유통 구조개혁 추진

소프트사업

- 협의회 설치, 재배기술 등 실증, 판매촉진, 각종조사 등

□ 하드사업

- ① 파 조제 로봇트 및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농협에 의한 임대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에 대해 도입조건 완화도 병행 실시)
- ② 집출하 저장시설, 직매시설, 잔여 처리시설 등 정비
- ③ 계약거래의 수송용기 정비 등

(3) 소비개혁 추진

□ 단체추진사업

- ① 채소의 영양·기능·소비동향 등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전개
- ②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 채소재배·수확·소비체험 지원
- ③ 날개 유통채소 및 흙문은 채소에 관한 제도 등

2.1.3. 사업실시주체

- 농업인단체, 영농집단, 민간단체 등

2.1.4. 보조율

- 1/2(단체추진사업은1/2 정액)

2.1.5. 2002년도 예산안

- 8,000 백만엔

2.2. 산지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2.2.1. 취지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파, 표고, 골풀 등에 대해 산지가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여름부터 요구하여 온 수입급증 농산물대응 특별대책 등의 대책에 추가하여 새로운 특

별대책을 실시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한다.

2.2.2. 사업 내용

(1) 채소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농협 등이 산지개혁계획을 수립, 구조개혁에 대응하는 경우에 현행 대책 메뉴에 추가하여 더욱 세심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체제·유통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에 대한 보조를 실시한다.

① 생산체제의 개혁 활동(예)

- 농업자재의 신제품 도입
- 품질향상을 위한 종자도입
- 퇴비, 녹비에 의한 토양개량 등

② 유통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활동(예)

- 수송 컨테이너 도입
- 규격 간소화
- 날개유통 실시 등

(2) 표고생산 유통개혁 긴급대책

표고의 생산체제 등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① 새로운 재배방식 및 고품질 종균 도입
- ② 건전한 식생활상 중요한 표고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전국단계의 세미나 개최 등을 긴급히 실시한다.

(3) 골풀 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수입품과 차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① 증식포 설치에 의해 우량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
- ② 신상품 개발과 그 도입촉진 등을 긴급히 실시한다.

2.2.3. 사업실시주체

-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영농집단, 민간단체 등

2.2.4. 보조율

- 1/2, 정액

2.2.5. 2002년도 예산안

- 5,000 백만엔
 - ① 4,600 백만엔
 - ② 200 백만엔
 - ③ 200 백만엔

2.3. 채소가격안정제도 개선

수입채소의 증가 등, 채소의 생산·유통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바탕으로 경영주체에 의한 다양한 생산유통 대책을 통해 산지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실시한다.

2.3.1. 계약채소안정공급제도 창설

계약거래시에 기후 등에 의해 수량부족, 가격하락 등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창설한다.

(1) 대상거래

농협·대규모 생산자와 가공·외식·양판점 등 실수요자와의 계약거래

(2) 대상산지 및 대상채소

채소 지정산지 등에서 생산되는 지정채소 및 특정채소

표 3 채소 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메뉴

항 목	대응사례
① 저비용생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종자이용에 의한 기계화재배 도입 ○파 간이수확기 등의 실증을 위한 기계구입 ○생분해성 재료도입에 의한 성력화 ○기계화대응 재배양식 도입 ○양액수경을 위한 배관 ○완효성 비료 이용 ○파 잔여의 퇴비화 ○신기술 도입촉진을 위한 기술지도(농협 등 주최)
② 계약거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 컨테이너 도입 (계약거래의 경우만. 농협 등 주최) ○간소화 규격 팜플렛 작성(농협 등 주체)
③ 고부가가치 채소생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 당도계 도입하여 고당도 파 생산 ○재배 이력기록을 위한 바코드 작성 ○에틸렌 흡착 등 선도 유지자재 도입(농협등 주체) ○신품종·지역품종 종묘도입에 의한 차별화 ○토양개량 재배방법의 개선 등에 의한 품질향상 ○천적 도입에 의한 고품질생산 ○저농약 재배(페로몬, 천적, 방충망) ○저화학비료 재배(토양분석, 녹비도입)
④ 수요확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이력 작성·포장용기 첨부 ○소규모 직매장 설치 ○상품소개를 위한 팜플렛 등 작성

(3) 보전내용

- ① 정량공급계약에서 작황변동에 의한 수량 감소시에 계약수량을 확보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보전
- ② 시장가격 연동계약에서 가격이 하락한 경우의 보전
- ③ 정량공급계약에서 작황변동에 의한 과잉 생산시에 출하조정(산지폐기 등)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보전

(4) 기금조성

정부·도도부현, 생산자가 기금을 조성

2.3.2. 지정채소·특정채소가격 안정제도 확충

시장출하에 가격하락시 보전제도의 대상을 확충한다.

(1) 보전대상 확대

- ① 지정소비지역을 폐지, 이 지역 외로 출하되는 채소도 대상으로 한다.
- ② 대규모 농가·법인이 제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도매시장에서 매입집하를 대상으로 한다.

(2) 최저 기준액 특례신청시의 하한 인하

2.2.3. 수급조정기능 강화

정부가 채소 수요와 공급 전망을 수립, 제시하고,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생산출하에 노력한다.

2.3.4. 2002년도 예산액(안)

- 13,544 백만엔

2.4. 채소가격안정제도 개선

2.4.1. 현상

- 채소의 수입급증과 가격하락
- 경쟁 상대는 국내 산지에서 중국·한국 등으로 변화
- 국제경쟁력이 있는 국내 산지의 육성이 과제

2.4.2.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혁

생산·유통체제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이프티 넷으로서 채소가격안정제도를 확충한다.

- 채소가격안정제도에 소요되는 경비 증액
2001년도 47억엔 → 2002년도 135억엔(전년대비 287%)
- 채소가격안정제도의 대상수량, 대상범위 확대
교부대상수량 2001년도 310만톤 → 2002년도 387만톤
보전율 2001년도 19% → 2002년도 24%

(1) 계약채소제도 도입

(가) 보전내용

- ① 정량공급계약에서 감수시 계약수량 확보경비 보전
(계약가격과 부족분의 구입가격 차액의 90% 보전)
- ② 시장가격연동계약에서 가격하락 보전
(지정채소·특정채소 가격안정제도에 준한 보전)
- ③ 정량공급계약에서 생산과잉시 출하조정경비 보전
(폐기분에 대해 기준가격의 40% 보전)

(나) 자금조성비율

- 지정채소의 경우
정부 : 도도부현 : 생산자 = 2 : 1 : 1
- 특정채소의 경우
정부 : 도도부현 : 생산자 = 1 : 1 : 1

(2) 지정채소·특정채소가격안정제도 확충

(가) 보전율 확대

- ① 지정소비지역의 폐지(대상출하지역의 전국화)
- ② 대규모 농가·법인을 대상
- ③ 시장 매입집하 대상

(나) 최저기준액의 특례조치 확충

- 원칙 : 평균가격의 55%
- 특례 : 50% 또는 45%

3. 채소의 가격 · 생산동향

3.1. 전체

추동채소 가격은 출하초기에는 한발 등의 영향으로 평년수준의 가격대였지만, 10월 이후는 동일본의 양호한 기후 등으로 주요 산지의 생육은 대체로 양호하고 출하량이 많았다. 연말 수요는 경기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화물의 이동이 좋지 않아, 시황은 평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다.

3.2. 근채 및 엽경채류

무, 마늘, 배추, 시금치, 파는 관동산을 중심으로, 양배추, 양상추는 관동 및 관동 이서산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다. 각 산지 모두 양호한 기후로 생육은 순조로우며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대이다.

3.3. 과채류

오이, 토마토, 피망 등 과채류는 서남 난지산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기후가 좋기 때문에 출하량도 많고, 10월 이후는 대체로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대이다.

표 4 신선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9월 상중순			2001년 11월 상중순			2001년 12월 상중순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엔/kg)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엔/kg)
무	114	127	107	51	75	73	42	54	61
당근	86	86	63	91	71	71	72	75	81
배추	84	86	84	30	81	61	26	68	62
양배추	70	113	79	47	70	59	62	54	69
시금치	726	98	100	301	80	89	286	57	80
파	377	141	138	248	165	109	185	128	85
양상추	232	124	123	105	64	62	148	44	60
오이	279	84	107	222	52	70	224	61	58
가지	290	130	123	330	101	83	385	89	81
토마토	260	105	95	294	85	71	267	68	67
피망	218	112	91	269	68	68	233	51	58
감자	84	76	80	86	86	81	78	74	74
토란	244	102	97	187	99	106	169	92	93
양파	69	115	82	64	83	81	63	78	79
지정채소계	159	107	98	114	82	78	106	69	72

자료: 도쿄청과물정보센터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 '평년대비'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임.

4.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1년 1~11월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89만 5,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2001년 11월의 수입량은 8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0%가 되었다.

표 5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 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630	573	740	885	926
양파	184	175	205	223	262
호박	144	136	129	154	133
우엉	-	-	-	72	82
브로콜리	74	72	75	91	79
생강	31	33	30	34	48
당근·무청	30	13	34	50	44
파 등	9	9	18	30	42
메론	27	24	29	39	34
마늘	24	25	27	26	29
아스파라거스	22	21	20	24	25
피망 등	4	6	9	11	16
토마토	1	1	4	9	13
가지	0	0	1	2	2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 「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6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2001년 11월

단위: 톤, %

	11월	전년동기대비	1~11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1,279	98	8,386	73
양파	20,953	72	246,817	105
마늘	1,906	103	27,078	102
파	5,372	124	31,340	84
브로콜리	6,338	135	76,144	104
결구양상추	277	176	4,189	218
기타양상추	233	110	3,628	166
당근 및 순무	2,434	63	45,324	115
우엉	7,670	81	73,608	101
기타 근채류	226	88	1,777	197
오이 및 가킨	1,653	139	6,324	149
아스파라거스	2,577	89	20,275	88
가지	278	134	1,672	97
샐러리	517	93	6,442	107
버섯	128	265	616	124
피망 등	2,256	209	19,519	137
시금치	3	112	122	523
호박	11,083	93	127,437	101
생강	2,346	92	47,795	106
수박	24	46	1,790	68
메론	1,813	87	31,022	98
딸기	514	84	5,422	101
기타 신선채소	899	93	9,307	104
합계	80,206	90	894,680	107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11월 데이터는 속보치이며, 확보치는 12월말 공표예정

5. 식물검역 상황

최근 주요 신선채소의 주요 수입식물 검역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6 식물 검역 상황

단위: 톤

		2001년11월 19일~25일	2001년11월26 일~12월2일	2001년12월 3일~9일	2001년12월 10일~16일
파	검사수량	1,329	2,062	1,771	1,347
	합격수량	710	1,034	805	583
	불합격수량	619	1,028	964	764
양파	검사수량	1,993	3,508	3,921	3,106
	합격수량	942	1,086	1,053	1,048
	불합격수량	1,051	2,421	2,867	2,059
토마토	검사수량	35	77	61	40
	합격수량	32	77	57	35
	불합격수량	4	0	4	5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246	271	278	238
	합격수량	246	271	269	234
	불합격수량	0	0	9	4
피망	검사수량	542	669	538	516
	합격수량	472	646	518	507
	불합격수량	70	22	20	9

자료: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 (1)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의 파, 양파, 토마토, 방울토마토 및 피망 등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2)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3)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요 검역조치를 통하여 그 후 합격이 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 <http://www.maff.go.jp/work/010131seisan/hyous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의 주요목재 단기 수급전망

일본 임야청은 2001년 9월 26일 목재수급대책 중앙협의회 예측회의를 개최하고, 2001년 4분기 및 2002년 1분기의 '주요목재 단기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1. 국산재(통나무)

제재용 통나무의 수요(공장입하량)는 신설주택 착공호수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제4분기는 33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5.9%), 2002년 제1분기는 29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수요량은 1,189만^m정도(전년대비 91.3%)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재

2.1. 통나무

수요(항구출하량)는 신설착공호수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제4분기는 10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9.3%), 2001년 제1분기는 10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4.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수요량은 424만^m정도(전년대비 89.9%)가 될 전망이다. 공급(항구입하량)은 수요

동향을 반영하여 제4분기는 10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2.2%), 2002년 제1분기는 10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3.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 공급량은 408만^m정도(전년대비 87.3%)가 될 전망이다.

2.2. 제재품

수요(항구출하량)는 신설주택 착공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4분기는 9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7.6%), 2002년 제1분기는 9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9.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수요량은 379만^m정도(전년대비 87.7%)가 될 전망이다. 공급(항구입하량)은 수요동향을 반영하여 제4분기에는 9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3.4%), 2002년 제1분기에는 9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3.7%)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도 총공급량은 371만^m정도(전년대비 85.7%)가 될 전망이다.

3. 유럽재

3.1. 통나무

공급(통관 기준)은 제4분기 2만^m정도, 2002년 제1분기 2만^m정도 이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공급량은 10만^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2. 제재품

공급(통관 기준)은 신설주택착공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KD 재와 같이 품질이 안정되어 있는 것 등으로부터 수요의 증가를 받아 제4분기는 57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2.2%), 2002년 제1분기는 6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3.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공급량은 237만^m정도(전년대비 107.8%)가 될 전망이다.

4. 남양재

4.1. 통나무

제재용 통나무의 수요(항구출하량)은 산지에서의 양질 재 감소, 제품수출로의 전환 등 때문에 제4분기는 6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0%), 2002년 제1분기는 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합판용 통나무의 수요는 국내공장의 감소, 합판원료를 칩엽수재로의 전환 등 때문에 제4분기는 51만^m정도(전년동기대비 78%), 2002년 제1분기는 49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1.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제재용, 합판용을 포함한 통나무 총수요량은 234만^m정도(전년대비 77%)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제재용, 합판용을 포함한 통나무의 공급(항구입하량)은 수요동향을 반영해 제4분기는 52만^m(전년동기대비 71.4%), 2002년 제1분기는 5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5%)가 될 것이며, 2001년도의 총공급량은 211만^m정도(전년대비 69.4%)가 될 전망이다.

4.2. 제제품

수요(항구출하량)는 신설주택착공호수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4분기는 23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8.3%), 2002년 제1분기는 22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9.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수요량은 90만^m정도(전년대비 94.8%)가 될 전망이다. 공급(항구입하량)은 수요의 동향을 반영해 제4분기는 22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4.4%), 2002년 제1분기는 22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공급량은 89만^m정도(전년대비 91.8%)가 될 전망이다.

5. 아프리카재(통나무)

수요(항구출하량)는 제재용, 합판용을 합하여 제4분기는 4.7만^m정도(전년 동기대비 75.8%), 2002년 제1분기는 4.7만^m정도(전년동기대비 79.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수요량은 21만^m정도(전년대비 88.9%)가 될 전망이다. 공급(항구입하량)은 제4분기 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9.3%), 2002년 제1분기 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57.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공급량은 22만^m정도(전년대비 95.2%)가 될 전망이다.

6. 북양재

6.1. 통나무

수요(항구출하량)은 합판의 침엽수화가 진행되고 신설주택착공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제4분기는 12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2%), 2002년 제1분기는 13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수요량은 519만^m정도(전년대비 90.6%)가 될 전망이다. 공급(항구입하량)은 수요동향을 반영해 제4분기는 12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6.2%), 2002년 제1분기는 135만^m(전년동기대비 94.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공급량은 518만^m정도(전년대비 99.8%)가 될 전망이다.

6.2. 제재품

공급(항구입하량)은 산지의 출하의욕을 반영해 제4분기는 14.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16%), 2002년 제1분기는 15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7.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공급량은 58만^m정도(전년대비 107%)

가 될 전망이다.

7. 뉴질랜드·칠레재

7.1. 통나무

수요(항구출하량)는 곤포용 수요의 불안 등 때문에 제4분기는 43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2.3%), 2002년 제1분기는 42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7.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수요량은 177만^m정도(전년대비 102.4%)가 될 전망이다. 공급(항구입하량)은 수요동향을 반영해 제4분기는 42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7.5%), 2002년 제1분기는 42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8.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공급량은 172만^m정도(전년대비 97.9%)가 될 전망이다.

7.2. 제재품

수요(항구출하량)는 수요처가 고정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4분기는 18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1.1%), 2002년 제1분기는 17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0.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총수요량은 70만^m정도(전년대비 99.3%)가 될 전망이다. 공급(항구입하량)은 수요동향을 반영해 제4분기는 17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3.9%), 2002년 제1분기는 17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공급량은 66만^m정도(전년대비 92.7%)가 될 전망이다.

8. 합판

국산합판과 수입합판을 포함하여 총수요량은 신설주택착공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4분기는 185만^m정도(전년동기대

비 89.4%), 2002년 제1분기는 18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8.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수요량은 742만^m정도(전년대비 94%)가 될 전망이다. 국산합판과 수입합판을 포함한 총공급량은 수요가 감소하고, 산지국의 강한 출하의욕을 반영하여 제4분기는 189만^m정도(전년동기대비 88.9%), 2002년 제1분기는 192만^m정도(전년동기대비 94.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공급량은 785만^m정도(전년대비 96.4%)가 될 전망이다.

9. 구조용 집성재

국산집성재와 수입집성재를 포함한 총공급량은 신설주택착공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품질·성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4분기는 31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3.4%), 2002년 제1분기는 30만^m정도(전년동기대비 102.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의 총공급량은 124만^m정도(전년대비 116.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일본 임야청, 2001. 10. 1
(장철수 cschang@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

중국 2002년 '농촌공작회의' 개최

중국 정부는 2002년도 농촌정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농촌공작회의'를 지난 1월 6, 7일 양일간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금년 1년간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고하게 추진하여, 농업 전반에 걸쳐 질과 효율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가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이번에 개최한 농촌공작회의는 당의 15차 5중 및 6중 전회의 정신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과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현재의 농촌추세를 분석하여, 2002년 농업과 농촌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이번 회의를 아주 중시하고 있으며, 정치국 상임위원회와 국무원은 별도로 회의문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를 제정하였다.

회의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2002년 농업과 농촌사업에 관한 견해'를 토론하였다. 국무원 부총리 온가보(溫家寶)는 회의에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전력을 다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주제로 한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의 농촌추세 분석, 농업구조조정, 농가 소득증대의 주요 임무와 정책적인 조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언급을 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둘째, 현재의 농업과 농촌경제구조를 조정하여,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셋째, 농업과 농촌경제구조

를 조정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삼개대표(三個代表)⁷⁾의 중요한 사상을 기초로 하여, 당의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회의는 먼저 현재 중국농업과 농촌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작년에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중앙의 농업과 농촌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관계 있는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수많은 농민들의 적극성을 크게 고무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경제가 진일보한 발전을 성취하도록 하였다. 농업생산은 심각하였던 가뭄재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구조조정은 초보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농가 소득은 회복하는 등 농촌사회는 안정을 유지하였다.

현재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농가의 소득증대이다. 작년, 농가의 소득은 다소 회복하여 증가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며, 특히 농가의 소득증가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첫해이므로 농업은 아마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소득증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농가의 소득증대는 농촌경제발전, 농민생활개선, 농촌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정책 및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반에 걸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전 당원은 이러한 문제를 중시하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농업과 농촌사업의 중점적인 임무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전반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하여야 한다.

7) 三個代表란 최근 중국 공산당의 역점사업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대표하고, 문화의 발전방향을 대표하고,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회의는 또한 새로운 단계에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가 있어야 하며, 종합적인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총체적인 지도사상은 ‘多予, 少取, 放活’이다. 다여(多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농촌 기초설비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퇴경환림(退耕還林)⁸⁾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민수입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취(少取)는 농촌의 세계개혁을 추진하여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방활(放活)은 당이 농촌에서 각종의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농민들의 적극성, 자주성,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농촌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농민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회의는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에 대하여 전략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국의 농업과 농촌경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근래 몇 년 동안 각 지역은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방향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경종업의 구조를 진일보하게 개선하여, 식량작물, 경제작물, 사료작물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였다.

목축업 발전의 가속화는 시장공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산물 품질을 크게 개선하고, 일부 열등품종을 도태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전문적인 품종을 발전시키고, 일부 유명상표의 상품을 배양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은 생산의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으로 진일보하게 집중시킴으로써, 농업의 지역화 및 전문화의 분업

8) 退耕還林은 열등지를 산림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중국이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하여 산림이 황폐화되었는데, 이러한 황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열등의 농경지나 부적절한 농경지를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체제를 점진적으로 형성하였다.

작년 농가 1인당 평균 순수입은 4% 이상 증가하여 농가의 수입 증가폭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반전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근래 몇 년 동안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각 지역이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회의는 농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임무이며,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지, 단번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조정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생산체제를 조정하여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동부지역과 대중도시 근교에는 첨단기술농업,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농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며, 연해지역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부지역은 식량생산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식량의 품종과 품질구조를 개선하고, 가공업과 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킴으로써, 식량산업에 특화하는 것이다. 서부지역은 퇴경환림(退耕還林)을 가속화하고, 특색 있는 농업, 생태농업, 절수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의 구조를 조정하고, 품질이 우수한 무공해농산물을 발전시키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중국농산물의 우수화와 전문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셋째 농촌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향진기업과 농촌의 2·3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산물 가공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큰 폭으로 높이는 것이다.

넷째 농촌의 직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촌노동력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농

가 소득기회를 확대하고, 중국상황에 적절한 도시화를 모색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목표를 실현하면, 중국 농업발전은 하나의 새로운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농가소득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농촌경제 전반에 걸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출현할 것이다.

회의는 각급 정부는 해당지역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철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표명하였다. 첫째, 선도기업의 역량을 진일보하게 강화하여, 농가의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증가에 일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과 학기술의 혁신과 기술보급체제를 건립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셋째, 농산물의 품질표준과 검역체계의 건설을 강화하여 농산물 품질의 안전을 확보한다.

넷째, 목축과 가금의 역병방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가 심각한 병충해의 빠른 박멸체제를 건립하고, 질병이 없는 축산물수출보호지역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다섯째, 농업정보의 수집, 정리 및 발표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고 개선하여, 농가와 기업이 시장의 변동상황에 따라 농업생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식량과 면화의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통일적이고 자유로우며, 경쟁적이고 유기적인 식량과 면화시장을 점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일곱째, 농촌의 기초적인 소형 설비의 건설을 강화하여, 절수관개, 사람

과 목축의 식수, 농촌의 메탄가스, 농촌의 수도와 전기, 농촌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회의는 농촌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표명하였는데, 농촌의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보급 및 개선하고, 현을 중심으로 하고, 현과 향이 농촌교육을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며, 학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의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였다. 농촌의 세계개혁사업이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된 지역은 정부가 학교설립경비를 확보하고, 농촌의 세계개혁사업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의 자금확보방안을 유지하여 농촌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농촌의 의료 및 위생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을 억제하는데 특히 전염병과 풍토병의 억제체제를 강화한다. 농촌의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운영체제를 개혁하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협력제도를 연구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

회의는 WTO 가입이 중국 농업발전과 개혁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보아, WTO 가입은 중국 농업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농촌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 유리하다. 농산물 수출의 국제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농업구조를 조정하여 근본적으로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외국의 자금, 기술, 관리경험을 들여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농산물 시장체제와 국가의 농업지지체제를 건립하는 것을 가속화시켜 농업과 농촌경제관리체제 및 무역체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WTO 가입은 중국 농업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한 바,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의 농산물 생산비와 가격이 비교적 낮고, 중국 농업의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토지집약형의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은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우위를 구비하고 있는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시장개척능력 또한 약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농업생산과 농민, 특히 주산지 농민의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업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와 지역특화를 개선하여 농업생산의 표준화와 농산물 품질의 개선을 추진한다. 각 항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수요의 변화에 적응하는 농촌경제체제와 운영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한다. 농업의 선진적인 실용기술을 광범하게 응용하고 생산과 유통 비용을 하락하여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WTO가 허용하는 정책을 충분히 이용하여 농업과 농민수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가운데 농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킨다.

회의는 '三個代表'의 중요한 사상을 기초로 하여 당이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의 15차 6중전회의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농촌간부의 품위확립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농촌에서 진행하고 있는 "三個代表"의 중요한 사상학습교육 활동은 농촌의 정치활동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금년의 교육학습활동은 주로 촌(村)에서 진행하고 있다.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농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교육을 위주로 농촌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간부의 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진정으로 농촌간부를 교육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회의는 금년의 농업과 농촌사업은 그 의의가 크나 아주 어렵고 방대함을 강조하였다.

자료: [http : //www.agri.gov.cn/news/2002/0108/01081.htm](http://www.agri.gov.cn/news/2002/0108/01081.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국무원 축산업발전 보고서 승인

1. 개인 경영주체의 축산업을 개선하여 생산력 강화

중국 국무원은 최근 농업부가 발표한 축산업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농업부는 향후 5~10년간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 경영주체의 축산업을 개선하여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축산업의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서 수출촉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WTO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향후 상정되는 외국에서의 축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규모확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긴급히 도모하고 있다.

2. 시장 수요에 근거한 제품생산을 추진

축산업의 개선을 위한 핵심으로서 가축·가금의 우량품종 선정, 개발, 보급과 축산물의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다양한 소비자층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가공품의 다양화, 품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번식능력 등이 뛰어난 국내 우량품종의 선정, 또 해외에서의 우량품종의 적극적인 도입을 실시한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

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산력 확보, 소와 양에 대해서는 식육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고있다.

더욱이 축산물에서 차지하는 유제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젖소의 개량 및 사육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축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수준 및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으로서 시장수요에 근거한 제품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3. 시장경쟁력 강화가 국내축산업 발전의 거점

한편, 가축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가축, 가금 및 축산가공품의 생산지,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방역체제 강화와 함께 해외에서의 전염병 유입방지대책, 수의사제도 확립, 수의업무 규정, 유전자변형작물의 관리, 규제 등에 대해서 관련법률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해마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규모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하여 시장경쟁력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가 국내 축산업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資料: <http://www.lin.go.jp/alic/momth/tfore/2002/jan/top-sp03.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2002년 농업법 제정 동향

1. 요약

미국 정부의 농가지원, 영양, 농산물 교역 및 식량원조, 환경보전, 금융, 유통, 농촌개발 및 연구 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들 법률들은 농업법(farm bill)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최근 농업법은 1996년 FAIR(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P.L.104-127)이며, 대부분의 규정들은 2002년 9월에 소멸된다. 2002년 농업법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차기 농업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하원(the House)은 지난 2001년 10월 5일 하원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에서 제출된 시책에 근거해 2011년까지 시행될 농업법(H.R. 2646)을 승인했다. 한편, 2001년 11월 15일 상원(the Senate) 농업위원회는 2006년까지 시행될 농업법(S. 1731)을 승인했다.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상정된 상원안(Senate bill)은 상원 본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세부 내용이나 지원수준이 서로 다르지만, 상·하원법안은 모두 직접지불(fixed payments), 목표가격(target price)과 연계된 새로운 반순환소득보조(counter-cyclical assistance), 곡물, 면화, 유지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론(marketing loan)과 같은 품목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두 법안은 어느

정도 수정을 거쳐, 낙농이나 설탕 부문에 대한 지원(상원의 낙농 부문에 대한 새로운 직접지불 도입)을 확대하고, 주요 작물에 대한 보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땅콩 할당제(quotas)를 폐지할 것이다. 또한, 두 법안은 환경보전계획 지출을 확대하고, 농업수출 및 식량보조계획을 재인가 할 것이며, 연구·영양(식량지원조치)·신용·농촌개발 부문의 활동 등을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다.

미국 의회 재무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추정에 의하면, 하원안(House bill)에 따른 정책시행으로 정부 예산지출이 향후 10년 동안 735억 달러가 요구되며, 이 중에서 488억 달러는 농가의 품목별 지원계획에 지출되고, 158억 달러는 환경보전계획에 지출될 전망이다. 또한 상원안에 따른 정책시행으로 정부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735억 달러(2002-06년 5년 동안 409억 달러)가 요구되며, 이 중에서 농가의 품목별 지원계획에 432억 달러(5년 동안 263억 달러)가 지출되고, 환경보전계획에 205억 달러(5년 동안 84억 달러)가 지출될 전망이다.

2. 논의 과정

상원 농업위원회는 2001년 10월 31일 차기 농업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1월 15일 2002-06년 동안 시행될 법안을 승인했다. 상정된 위원회의 법안(S. 1731)은 상원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심의과정을 거쳐 수정될 것이다.

이에 앞서 하원은 2001년 10월 5일 차기 농업법(H.R. 2646)을 승인했다. 주로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상정된 시책(H. Rept. 107-191)에 근거한 이 법안은 향후 2002-11년 동안 시행될 주요 농업 및 식량계획 등과 관련된 정책사항들을 포함할 것이다. 초기에 보고된 법안의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나 차이 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결정되었다.

3. 주요 내용

농업지원, 식량원조, 농산물 무역, 유통, 농촌개발 부문 관련 정책들은 다양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들 법률들이 독자적인 법으로써 간주되고 시행될지라도, 농업법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받고 개정되며 갱신된다. 가장 최근의 농업법은 1996년 FAIR로서 이의 대다수 규정들의 효력이 2002년에 소멸된다.

모든 농업법은 중앙정부가 농업생산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 및 방법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이나 품목별 가격지지정책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업법은 농산물 무역, 해외 식량원조, 환경보전, 국내 식량지원조치(food stamp), 농업신용, 농촌개발, 농촌 연구 및 교육 부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1. 예산 및 무역제약

3.1.1. 정부예산

대부분의 법률처럼 농업법은 정부의 예산제약 내에서 운용된다. 농업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2002-11년(회계연도 기준)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5월 의회는 735억 달러의 추가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CBO의 추정에 따르면 하원안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10년 동안 4,15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에서 735억 달러가 추가경비에 소요된다. 또한 농가 품목별 지원계획에 735억 달러 가운데 488억 달러가 지출되고, 환경보전계획에 158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다. 한편 식량지원(food stamp)이나 영양지원계획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4,150억 달러 가운데 2,491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다.

또한 CBO의 추정에 따르면, 상원안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10년 동안 4,13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에서 734억 달러(2002-06년 5년 동안 409억 달러)가 추가경비에 소요된다. 또한 농가 품목별 지원계획에 734억 달러 가운데 432억 달러(5년 동안 263억 달러)가 지출되고, 환경보전계획에 205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다. 한편 식량지원(food stamp)이나 영양지원계획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4,130억 달러 가운데 2,525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다.

3.1.2. 무역

UR 농업협정(The multilateral Uruguay Round Agreement of Agriculture, URAA)은 미국이 감축대상 국내보조(amber box)와 같이 생산과 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큰 국내 농업보조에 연간 191억 달러만을 지출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URAA는 어떤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는지 혹은 어떤 정책(예산)이 지출 항목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하원 위원회 법안은 WTO 규정 내에서 농업부 장관이 계속적인 농업지원계획에 대한 지출을 보장하도록 승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4. 관련 규정

4.1. 농가소득 및 품목별 가격지지

미국 정부는 1996년 농업법을 통해 농업정책을 개정했다. 농산물시장전환법(the 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 AMTA)은 밀, 사료곡물, 면화, 쌀을 대상으로 생산에 근거한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s)를 고정금액의 생산자유직불제(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 PFCP)로 대체했

다. 이런 직불제는 시장가격이나 현행 식부의향(planting choice)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AMTA는 품목별 지원계획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향후 7년 동안 PFCP에 소요되는 36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AMTA는 계약 품목, 대두, 유지종자, 특정 면화를 대상으로 유통지원 용자제의 가격보장을 계속 유지했다. 이런 경기변동에 따른 반순환소득 직불제도(counter-cyclical program)는 특정 품목의 미상환 용자단가와 낮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불한다. 미국 농업부(USDA)는 마케팅론이나 용자부족불제에 필요한 상품신용공사(CCC)의 예산이 회계연도 2001년에 640억 달러, 2002년에 5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AMTA는 상품신용공사의 용자액이나 수입 할당량을 통해서 운용되는 설탕이나 땅콩에 대해 시장가격지지제도를 계속 유지했다. 또한 1996년 농업법은 낙농부문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하기로 계획했지만 의회는 계속해서 유지했다.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라, 재해와 무관한 농가 소득보조 명목으로 대규모 특별 긴급 농가지원대책(ad hoc emergency farm aid package)에 이미 AMTA가 승인한 예산액 이상인 대략 23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 중에서 약 180억 달러는 PFCP에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특별 보조금 명목으로 대두, 땅콩, 담배, 우유, 꿀, 양모, 염소털(mohair) 등의 생산자에게 지원되었다.

대다수 정책입안자나 농업단체들은 특별법(ad hoc laws)에 의한 임시대책 보다는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반순환소득지불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4.1.1. 생산자유회직불제도(Product Flexibility Contract Payment)

대다수 생산자 단체들은 끊임없이 매년 PFCP와 같이 일시불 총액(lump sum) 보조금을 요구한다. 일부 생산자들은 PFCP 대상 품목에 대두를 포함

하고, 가능하다면 최근에 긴급지원법(emergency assistance laws)에 따라 직불제의 혜택을 받은 담배, 땅콩, 우유, 양모, 염소털, 사과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런 직불제는 토지가격이나 지대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상·하원 위원회 법안은 PFCP의 개념과 유사한 직불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4.1.2. 반순환소득지원(Counter-Cyclical Assistance)

최근 마케팅론보다 폭넓은 혜택이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조정적 소득지원계획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두 정책들은 세부적으로 상이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이 감소할 경우 현행법에서 제공되는 것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가령, 2001년초 21세기 생산농업위원회(the Commission on 21st Century Production Agriculture)는 PFCP 대상 작물의 수입이 기준연도에 비해 일정 비율 감소할 경우 추가소득지불(Supplemental Income Support)을 권고했으며, 일부는 보다 목표 지향적인 반순환소득보조(counter-cyclical aid)를 요청했다. 미국농업연합회(the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는 이 보조가 특정 PFCP 대상 작물에 대한 주(州)의 조수익이 최근 평년 수준보다 하락할 경우 지불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하원 위원회 법안은 개별 품목에 대해서 부셸(혹은 파운드) 당 목표가격을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순환소득지불을 포함하고 있다.

4.1.3. 마케팅론 지원(Marketing Loan Assistance)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s, LDPs)뿐만 아니라 마케팅론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융자단가(loan rates)의 증가를 요청하는가 하면, 다른 단체들은 대두(현행 PFCP 대상 품목이 아님)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시키도록 현행 융자단가를 재조정(re-balancing)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비대상 품목(과일, 채소, 우유, 담배)이나 현행 특별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품목 등에 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는 논

의 중에 있다. 상·하원 위원회 법안은 작물, 면화, 유지종자, 양모, 양털, 꿀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론을 계속 규정하고 있다. 상원은 완두콩(peas), 렌즈콩(lentils), 병아리콩(chickpeas)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4.1.4. 공급 관리(Supply Management)

대다수 주요 농민단체들은 생산규제나 공급관리 수단이 다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Union)이나 전국농민단체(National Farmers Organization)는 생산면적을 감소시킴에 따라 용자단가가 증가하는 작물의 자율 휴경조치(set-asides)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증가할 때까지 작물을 저장하는 농민들에게 보조하는 품목별 비축계획(commodity reserve programs)을 반대했다. 상·하원 위원회 법안에는 이런 정책수단을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있다.

4.1.5. 가격지지 품목(Price-Supported Commodities)

담배, 땅콩, 설탕, 우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지계획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농가판매가격(farm price)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식용목적으로 재배된 담배나 땅콩의 경우 비상환용자(nonrecourse loans)나 유통쿼터제가 적용되고, 설탕의 경우 가격을 지지하고 수입을 조절하기 위해서 관세율쿼터제가 활용된다. 우유가격지지제도는 특정 가격하에서 농업부(USDA)의 유제품 직접구매, 우유 유통명령제(milk marketing orders), 수입유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을 통해서 유지된다. 현재 WTO는 이런 정책들이 생산 및 무역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유지·수정·제거 여부가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이들 제도들이 농가소득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임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가격을 지지하는 보완적 대체적 수단으로써 직접지불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상·하원 위원회 법안에서는 설탕이나 낙농 지원계획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곡물이나 면화 지원계획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땅콩 지원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상원 위원회 법안은 낙농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반순환소득지불제를 도입했다.

4.1.6. 환경 직접지불(Green Payments)

생산품목 기준이 아니라 토지·수질·대기질·야생서식지 등을 보호하거나 농촌활력(amenity)을 제공하는 영농기법을 도입하는 농민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하는 환경직불제(green payments)를 도입함으로써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1.7.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특정 품목생산과 연계된 모든 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대신에 농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지원계획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보조하는 위험관리는 작물보험제도(crop insurance program)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가수입보험(whole farm revenue insurance), 소득안정화계정(income stabilization accounts), 선물시장(futures markets) 및 기타 옵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1.8. 하원법안(House Bill)

하원법안(H.R.2646)은 곡물, 면화, 유지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연간 개인당 5만 달러로 제한된 고정된 생산중립적 직불제(fixed, decoupled payments)와 ‘농산물 평균시장가격 + 고정된 생산중립적 직불’의 합계와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며, 연간 개인당 7만5천 달러로 제한된 새로운 반순환부족불제(counter-cyclical deficiency payments)를 실시함.

(2) LDPs 뿐만 아니라 현행단가 수준에서 마케팅론을 유지하고, 연간 상한 지불액을 15만 달러로 제한함. 고정된 생산중립적 직불이나 반순환소득지불은 각 농가의 AMTA 기준 혹은 갱신된 계약면적, AMTA 작물 수확량의 85%에 대하여 실시함.

(3) 과일이나 채소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 생산자율직불제를 지속함.

톤당 36달러의 고정된 생산중립적 직불, 톤당 480달러의 목표가격, 톤당 350달러의 용자단가를 따르는 새로운 땅콩 지원계획은 기타 작물의 지지 계획과 유사하다. 또한 자산가치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톤당 200달러 (연간 파운드 당 10센트)를 보상하는 유통쿼터제는 폐지될 것이다. 설탕의 경우 파운드 당 18센트가 지원되며, 유통회비(marketing assessment)의 제거, 용자확대 등 약간 수정된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유제품(dairy)의 경우 백 파운드(cwt) 당 9.9달러의 현행 지원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마케팅론과 LDPs는 상품 양모에 대해 파운드 당 1달러, 중품 양모에 대해 파운드 당 40센트, 염소털에 대해 파운드 당 4.2달러, 꿀에 대해 파운드 당 60센트를 지원한다.

4.1.9. 상원법안(Senate Bill)

2002-06년 동안 적용되는 상원법안은 곡물, 면화, 유지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생산중립적 직불제 및 ‘농산물 평균시장가격 + 고정된 생산중립적 직불’의 합계와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새로운 반순환소득지불제를 실시함. 이들 제도의 개인 당 연간 상한을 10만 달러로 제한함.

(2) LDPs뿐만 아니라 하원법안보다 높은 수준의 용자단가에서 마케팅론을 유지하고, 연간 상한 지불액을 15만 달러로 제한함. 고정된 생산중립적 직접지불과 반순환소득지불제는 각 농가의 현행 AMTA 기준 계약면적과 작물 수확량이나 갱신된 계약면적과 수확량의 100%에 대해서 실시함.

(3) 과일과 채소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 생산자율직불제를 유지함.

땅콩 지원계획은 심의중에 있는 하원법안과 유사하지만 용자단가나 목표가격이 더욱 높은 수준이다. 설탕지원은 하원법안처럼 유지될 것이다. 유제품의 경우 현행 지원수준인 백 파운드 당 9.9달러를 유지하겠지만, 우유의 기준가격이 백 파운드 당 14.25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경기조정적 부족불제의 특성이 추가될 것이다. 마케팅론과 LDPs는 상품 양모, 중품 양모, 염소털, 꿀에 대해 각각 파운드 당 1달러, 40센트, 2달러, 60센트, 한편

건조콩, 렌즈콩, 큰병아리콩, 작은병아리콩에 대해 각각 백 파운드 당 6.78 달러, 12.79달러, 17.44달러, 8.1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상원법안은 회계연도 기준 2002년과 2003년에 매년 1억 달러, 2004년에 2억 2,000만 달러, 2005년에 1억 4,000만 달러, 2006년에 2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신용공사의 기금을 이용하여 특용작물을 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비특용 작물의 수매에 매년 3,000만 달러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상원법안은 새로운 항목들을 도입하였으며, 농가소득이나 품목별 지원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BO의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하원 법안의 품목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488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농업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총 지출은 거의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표 1 상·하원 법안의 용자단가, 직접지불단가, 목표가격 비교

작물	용자단가		직접지불단가				목표가격 ¹⁾	
	H.R. 2646 ²⁾	S. 1731	H.R. 2646	S.1731 ³⁾			H.R. 2646	S. 1731
				2002/03	2004/05	2006		
밀 (\$/부셸)	2.58	3.00	0.53	0.45	0.225	0.113	4.04	3.45
옥수수 (\$/부셸)	1.89	2.08	0.30	0.27	0.135	0.068	2.78	2.35
수수 (\$/부셸)	1.89	2.08	0.36	0.31/0.27	0.135	0.068	2.64	2.35
보리 (\$/부셸)	1.65	2.00	0.25	0.20	0.10	0.05	2.39	2.20
귀리 (\$/부셸)	1.21	1.50	0.025	0.05	0.025	0.013	1.47	1.55
면화 (\$/파운드)	0.5192	0.55	0.0667	0.13	0.065	0.0325	0.736	0.68
쌀 (\$/백파운드)	6.50	6.85	2.35	2.45	1.225	0.6125	10.82	9.30

표 1 상·하원 법안의 용자단가, 직접지불단가, 목표가격 비교(표 1 계속)

작물	용자단가		직접지불단가				목표가격 ¹⁾	
	H.R. 2646 ²⁾	S. 1731	H.R. 2646	S.1731 ³⁾			H.R. 2646	S. 1731
				2002/03	2004/05	2006		
대두 (\$/부셀)	4.92	5.20	0.42	0.55	0.275	0.138	5.86	5.75
유지종자 (\$/파운드)	0.087	0.095	0.007	0.01	0.005	0.0025	0.1036	0.105
땅콩 (\$/톤)	350	400	36	36			480	520
상품양모 (\$/파운드)	1.00	1.00						
중품양모 (\$/부셀)	0.40	0.40						
염소털 (\$/파운드)	4.20	2.00						
꿀 (\$/파운드)	0.60	0.60						
설탕 (\$/파운드)	0.18	0.18						
사탕무우 (\$/파운드)	0.229	0.229						
건조콩 (\$/백파운드)		6.78						
렌즈콩 (\$/백파운드)		12.79						
큰병아리콩 (\$/백파운드)		17.44						
작은병아리콩 (\$/백파운드)		8.10						
우유 (\$/백파운드) ⁴⁾	9.90	9.90						14.25

- 주: (1) 법안마다 지불기준이 상이함.
(2) 용자단가는 최대허용수준임.
(3) 2002-2006년 동안 감소추세의 지불단가를 반영함.
(4) 낙농제품 수매계획에 따른 농가가격지지 수준임.

5. 환경 및 보전

농업법의 환경부문에서는 기존의 정책이 다소 수정되고, 자연자원이나 환경혜택을 사회에 제공하거나 농경지를 복구 및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비용분담지불(cost sharing payments), 기술지원, 교육 및 연구 등을 통해서 현행 보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이들 정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985년 농업법을 시작으로 의회는 토양침식 규제, 수질보호 등에 국한된 전통방식에서 탈피하여 습지보호, 야생 서식지 보호 및 개발, 대기 및 수질개선 등 환경정책을 확충하였다. 1996년 농업법이 시행된 이후 탄소격리, 생물총량 에너지생산, 초지 보호 및 복원, 비거점(non-point) 수질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농업의 역할 등 새로운 현안들이 부상했다.

수년 동안 의회는 지원을 원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적으로 취약한 토지나 습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민 스스로 토지를 관리하고 자연 자원의 가치를 보전하는 지역보전권(easements)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보전 대책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보전대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원 예산이 확충되었다. 회계연도 1985년에 USDA의 보전대책 시행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현재 매년 30억 달러 이상 요구된다. 이렇게 확충된 자금들은 토지은퇴계획,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습지유보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 WRP) 등에 배정되었다.

1996년 농업법에서 5가지 보전계획에 소요되는 지원기금이 의회의 세출 승인(appropriation) 과정을 통해서 자유재량적 경비에서 상품신용공사를 통한 강제적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CBO에 따르면 회계연도 2001년 강제적 보전계획에 소요되는 총 지원기금이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대다수 보전계획들은 2002년(회계연도 기준) 말에 그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보전계획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업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기간에 농민단체들은 기존의 보전정책 기금을 확충하고, 농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01년 11월 위원회가 채택한 농업법(S.1731)에 근거하여 환경보전보장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이 수립되기 이전의 독립법안(S.932)에 ‘환경직불제 (green payments)’의 개념이 반영된 바 있다.

5.1. 하원법안

하원법안(H.R.2646)은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전규정을 제외한 수정안이 채택된 이후에 최종 승인되었다. 제2장에 있는 환경보전 규정은 회계연도 2001년 말까지 추가 재원으로 현재 수준보다 80% 증가한 16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CRP 최대 등록면적을 3,640만 에이커에서 3,920만 에이커로 확대하고, 모든 주의 습지보전계획을 확충함.
- (2) 매년 15만 에이커를 WRP에 등록하도록 허용함.
- (3) 환경질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에 소요되는 재원을 2002년(회계연도 기준)에 2억 달러에서 2010년과 2011년에 15억 달러로 매년 점진적으로 확충함. 또한 최초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지하수·지표수 보호에 대한 새로운 비용분담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6,000만 달러로 확충함. 참여자와의 EQIP 최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며, 개별 계약시 연간 5만 달러로 확충함.
- (4) 공인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법안이 시행되기 6개월 이내에 인증계획에 대한 규정을 수립함.
- (5) 야생서식지보호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에 소요되는 재원을 회계연도 2002년에 2,500만 달러에서 2010년에 5,000만 달러로 확충함.

- (6) 연간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함.
- (7) 자원보전 및 개발계획(Resour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RC&D) Program)을 영구적으로 인가함.
- (8) 2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새로운 초지 보전대책을 수립함.
- (9) 해당 토지에 대한 보전계획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농지보전계획(Farmland Stewardship Program)을 수립함.
- (10) 노후한 유역에 대한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1,500만 달러를 제공함.
- (11)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대다수 계획들을 폐지함.

5.2. 상원법안

위원회 법안(S.1731)도 H.R.2645처럼 대다수 환경보전 계획들을 수정하고 재인가 했다. 상원 위원회는 보전기금이 회계연도 2006년 동안 60억 달러 이상, 2011년 동안 18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보전대책을 시행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차등 보조하는 새로운 CSP를 신설함.
- (2) EQIP에서 제공하는 재원의 5%를 이용하여, 농민이 강 유역의 환경 및 보전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새로운 협력계획을 신설함.
- (3) 공인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USDA가 개발한 기준에 맞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허용함.
- (4) 보전계획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함.
- (5) 관련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보전계획들의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을 조사하고, 회계연도 2005년 4월까지 토양 및 수자원보전법(Soil and Water Resources Conservation Act)을 이행하도록 요구함.
- (6) CRP 최대 등록면적을 3,640만 에이커에서 4,000만 에이커로 확대하고, 소규모 습지보전계획을 모든 주로 확대 적용함. 또한 CRP 대상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7) 최대 등록면적은 총 222만 5,000 에이커이며, 매년 WRP에 25만 에이커가 등록되도록 허용함. 이들 면적 가운데 매년 2만 5,000에이커까지 새로운 습지보전개선계획(Wetlands Reserve Enhancement Program, WREP)에 등록되도록 허용함.

(8) EQIP에 필요한 자금을 회계연도 2002년에 최초 5,0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점진적으로 2006년까지 12억 5,000만 달러씩 증액함. 포괄적 영양관리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영농기법을 확대하고, 참여자와의 최소 계약기간을 3년까지로 정함. 연간 지불한도를 개인 당 5만 달러 혹은 계약 당 15만 달러로 제한함. 그리고, 혁신적인 보전기법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기부계획에 매년 백만 달러까지 배정함.

(9) RC&D계획을 영구적으로 인가함.

(10) WHIP에 대한 재원을 회계연도 2002년에 5,000만 달러에서 2005년에 1억 2,500만 달러로 확충하고, 이 재원 중에서 적어도 15%는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배정하고, 주요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15년 동안 토지를 등록시키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15%를 배정함.

(11) 매년 1,500만 달러가 배정된 새로운 강유역 위해요소 감축계획(Watershed Risk Reduction Program)을 승인함.

(12) 매년 500만 달러가 배정된 새로운 5대호유역침식관리계획(Great Lakes Basin Erosion Control Program)을 승인함.

(13) 매년 6,000만 달러가 배정된 방목지 보전계획을 승인함.

(14) 회계연도 2002년에 1억 5000만 달러가 배정되어 2006년에 2억 5,000만 달러로 증액하는 FPP 재승인.

(15) 2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초지보전계획 수립

(16) 회원자격 및 책임 여부를 설명하는 주 기술위원회(State Technical Committees) 신설규정을 재정립

6. 해외무역 및 식량원조

미국 농업발전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의 기여도는 매우 크다. 따라서 농업법의 무역 조항들은 농산물 무역분쟁, 수출보조, 해외 식량원조 계획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가령, 다자간 농산물 무역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WTO 내에서 다양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간, 국가간 무역협상은 미국 농산물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6.1. 1996년 농업법 규정

1996년 농업법 제2장에서는 미국의 해외 식량원조계획이나 농산물 수출 계획이 수정·보완되었으며, 'Food for Peace' 계획(평화를 얻는 대가로 식량 지원)이라 불리는 P.L.480의 제1장(미 농업수출 지원), 제2장(인도주의 농산물 원조 및 개발활동), 제3장(쌍무적 식량개발원조)을 회계연도 2002년까지 재인가 했다. 이러한 농업법은 이전에 승인된 지원 수준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한 수출신용보증을 2002년(회계연도 기준)에 확대 시행했다. 또한 감축된 지원 수준에서 수출진흥계획 혹은 수출보조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 or Export Subsidy Program),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접근계획(Market Access Program, MAP), 해외시장개발협력 계획(Foreign Market Development Cooperator Program, FMDCP) 등을 확대시행 했다.

6.2. 주요 현안

미 의회는 식량원조 및 수출지원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EEP 및 유제품수출촉진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 하에서의 보조 수준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URAA)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된다. 실제로 EEP가 최근에 시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 MAP와 같은 시장진흥계획, 식량원조계획, 수출신용 등은 현행 URAA 아래서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이 과잉 보조로 인한 과잉 잉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식량원조나 수출신용을 악용함으로써 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제삼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수출보조나 진흥계획들이 실제로 해외판매를 증가시킬지 의심했다. 심지어 판매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지 혹은 농가의 직접보조가 보다 비용 효율적인지 의심했다. 일부는 이런 계획들이 미국 농민들보다는 주로 대규모 식량기업이나 수출기업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식량원조와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의회는 농업법을 근거로 다자간 혹은 쌍무적 무역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목적이나 전략을 수립한다. 미국 농업단체는 무역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제품, 땅콩, 설탕, 과일 및 채소 부문 등은 무역장벽 제거에 따른 수입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6.3. 하원법안

H.R.2646의 제3장은 MAP, FMDCP, P.L.480 'Food for Peace 혹은 Food for Progress(FFP)', 수출신용보증, EEP 등을 증가한 지원 수준에서 2011년까지 재인가 하고 있다. 가령, MAP에 의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현재 9,000만 달러에서 연간 2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액하고, FMDCP의 재원은 연간 3,70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이다.

농업법은 새로운 P.L.480 계획의 목적으로써 국제분쟁 예방대책을 추가하고 있으며, 매년 제2장 품목의 최소 수준을 2.025MMT에서 2.25MMT로

높이고 있다.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2011년까지 국제 'food for education' 계획 및 아동영양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심의기간 동안에 유통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과일이나 채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6.4. 상원법안

S.1731의 제3장은 MAP, FMDCP, P.L.480 'Food for Peace, FFP', 수출신용보증, EEP 등을 2006년까지 재인가 했다. 하원법안과 비교해 볼 때 상원법안은 ① MAP 재원은 현재 9,000만 달러에서 2006년(회계연도 기준)까지 1억 9,000만 달러로 보다 점진적으로 증액하고, ② FMDCP 재원은 2004년까지 4,25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이며, ③ 새로운 무역기구나 신흥시장에 MAP나 FMDCP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④ 관련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FFP 지원을 확충하고, 계획에 따른 수송 및 행정비용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며, ⑤ 쿠바로의 식량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해 민간 재원조달에 대한 법령을 두어 규제하며, ⑥ 새로운 생명공학연구, 교육정책 부문에 재원을 배정하고, ⑦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무역장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수출업자들을 위해 신속한 대응책을 인가한다. DEIP는 농업법의 제2장 유제품규정에 따라서 2006년까지 갱신될 것이다.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제2장의 최소수준은 2006년까지 2.5MMT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연간 최대 재원은 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또한 정책목적으로써 국제분쟁 예방대책이 추가될 것이다. 또한 상원 무역조항은 연간 2억 달러가 소요되는 교육을 위한 국제식량계획을 위임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승인된 수정안은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부패성 농산물(가령, 신선 및 냉동 과일이나 채소), 살코기, 쇠고기, 돼지고기, 양, 양식어류, 조개류, 땅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상원은 수입육에 대한 USDA 품질등급제를 금지시키고 있다. CBO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상원과 하원 무역조항이 시행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각각 14억 달러, 20억 달러에 달한다.

7. 기타

2002년 농업법안에서의 나머지 부분은 농가신용 및 재정을 비롯하여, 농촌개발, 농촌 연구·지도·교육, 식량지원계획(Food Stamps) 및 긴급식량지원계획(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산림정책, 에너지, 기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 CRS Report for Congress, "The 2002 Farm Bill: Overview and Status", 2001. 11. 29.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양돈경영 보험프로그램 도입

1. 축산부문 최초의 보험제도

미국 농업부(USDA)는 2001년 11월 21일 돼지가격 하락시의 리스크 관리 대책으로 아이오와주의 양돈경영을 대상으로 한 2가지 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농가의 세이프티 네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작물보험법의 개정법으로 2000년 6월에 제정된 농업리스크보호법(Agriculture Risk Protection Act of 2000)에 근거한 축산 파이롯트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축산부문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셈이다.

2. 리스크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법률상 축산 파이롯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축종은 육우, 양, 돼지, 산양, 가금 등 전반을 포함한다. USDA의 연방작물보험공사(FCIC)는 2004년까지 2개 이상의 파이롯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축산경영의 리스크 관리 대책으로서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시 방법으로는 선물 옵션거래의 활용이나 가격·수입의 변동,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예산규모는 2001~02년 1,000만 달러, 2003년 1,500만 달러, 2004년 2,000만 달러이다.

3. 아이오와주 양돈경영을 사례로 시행

이번에 결정된 파이롯트 프로그램이 왜 아이오와주의 양돈경영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돈육가격은 생산의 증감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워, 미국에서는 1998~99년에 대폭적인 가격 하락을 경험하는 등 세이프티 네트의 도입이 양돈관계자에 의해 요구되고 있었고, 또 아이오와주는 돼지 사육두수 1위를 자랑하는 가족경영 중심의 전통적인 생산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사례 지역으로 최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2가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3.1. 축산조수입 파이롯트 프로그램

최근 30일간의 비육을 전제로 하고, 보험기간은 6개월이다. 이 사이 대상두수는 1만 5,000두가 상한이다. 사료비용(옥수수나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거나 육돈가격이 하락한 경우 각 생산자가 선택한 보증비율(85~100%)에 따라 일정 조수입을 보증하는 내용이다. 육돈 및 사료가격은 선물계약에 의한다. 보험은 2002년 7월에 판매 개시된다. 2002년 8월 1일~2003년 1월 31일이 최초 대상기간이다.

3.2. 축산리스크보호 파이롯트 프로그램

보험기간은 90일, 120일, 150일, 180일 등 4종류이며, 대상두수는 3만 2,000두이다. 지표가 되는 육돈가격이 생산자가 선택한 보증가격을 하회한 경우 보증비율(70~95%)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된다. 보험은 2002년 4월에 판매가 개시되어 연중 판매된다. 이번 파이롯트 프로그램의 성과여하에 따라서는 장래에 대상 축종 및 지역의 확대, 더욱이 작물보험과 같은 항구적인 조치로의 이행도 고려되고 있어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資料: <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2/jan/top-us02.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남아시아에서의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영향

기후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물, 식품, 주거지, 건강, 그리고 에너지, 교통, 산업과 같은 경제 하부구조),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강우, 토양, 바다, 기상이변, 생태계). 전 지구적으로 오늘날의 기후는 지난 140년 동안 가장 따뜻하다. 총 강수량이 늘어난 지역들 가운데에는 극도로 많은 강수량을 보인 곳이 많다. 반면에 정상적인 계절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자주 보이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앞으로도 늘어남에 따라 지표의 온도는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1.4도에서 5.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지적으로는 강우량의 증감이 모두 나타날 것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평균 강수량은 늘어날 것이다. 해수면도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0.14m에서 0.80m까지 올라갈 것이다. 2100년 이후에는 기온과 해수면이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지구의 기후에 인류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지구온난화는 현실적인 위협으로서,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자연 생태계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된다. 열대, 아열대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수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주해야 할 지 모른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그에 따라 사이클론의 강도(풍속)가 커진다

고 한다. 경제가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미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에너지, 식수, 식량에 대한 수요 증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 그리고 그 영향이 국지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정확한 정도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측하고 방지 혹은 최소화하며, 그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처해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기준 삼아 취약성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보면, 높은 인구밀도와 비교적 낮은 경제성장률이 특징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이클론이나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재해에 상당히 취약하다. 기후변화는 이들 나라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관개농업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공업부문이 성장하면서 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공급과 수요의 변화가 더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수자원과 농업부문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이러한 변동의 성격과 정도가 얼마 만큼인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후의 가변성 때문에 전략곡물의 공급과 식량 안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작물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응전략과 적절한 경영방법을 평가해내고,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후의 가변성, 작물관리, 농업생산성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사실 거의 모든 농업이 장기간의 변화(평균 기후의 변화), 단기간의 변

동(연간 변화)에 민감하다. 대기권의 CO₂ 증가, 온도상승 및 토양에서의 수분증발에 따라 식물의 생리과정, 즉 광합성과 발산작용도 촉진된다. 기온이 올라가면 조기 개화되고 알곡이 여무는 기간을 단축시켜 총 재배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재배기간이 줄어들수록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떨어진다. 따라서 따뜻해진 대기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변화된 환경조건에 적절한 유전자형을 개발하고 적정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곡물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상당부분을 회피하거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안저지, 델타는 홍수와 침식, 염분침투 등에 특별히 위험하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배수가 어렵게 되고,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농업적 토지이용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바닷물이 침투하게 되면 일부 작물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변종을 심어야 할 지 모른다.

남아시아에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선채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려면 단위 면적과 용수당 생산성을 올리기 위하여 보다 집약적인 원예작물 재배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도시와 도시주변에서 많이 행해지는 무절제한 화학 투입재와 오염된 용수의 사용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도시지역의 특화, 다변화된 생산체계(채소, 과일, 뿌리를 먹는 작물들)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천연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역단위에서 취해야 할 것이다. 식량작물과 콩과식물, 공업용 작물들(유지, 고무, 수지, 음료, 섬유, 의약품, 방향 식물), 그리고 원예작물들로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량과 양분 확보에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계속하면서 생산량의 상한을 높이고 생산격차를 줄여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문제란 불확실성의 증가,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 증대, 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범위의 확장,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사이의 시간지체, 인과관계의 지역간 차이, 문제의 전 지구적 범위로의 확대, 다양한 온실가스와 煙霧(aerosol)를 고려할 필요성 등이다. 기후변화의 과정과 영향, 그리고 그러한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 인도 기술연구소의 무라리 랄 교수가 APO 주최 '농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구회의'(2002. 1. 7~12, 인도 뉴델리)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임.
(허 장 heojang@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EU의 가격지지 및 직접지불정책 동향

1.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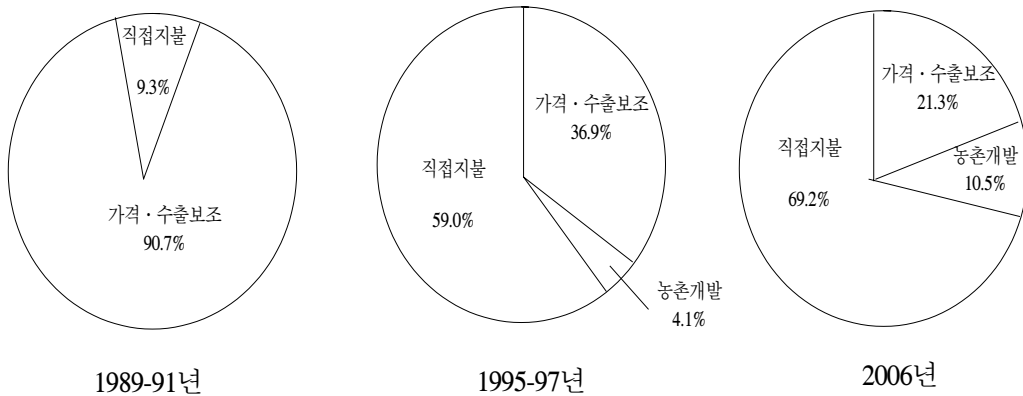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은 1992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성공을 지탱하면서 새로운 여건변화와 기회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 이후의 농정방향을 포함하는 Agenda 2000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농업부문 예산은 시장정책(식물 및 가축위생 조치를 포함)에 380억 ECU이고 농촌개발 조치에 43억 ECU가 배정되었다. 2000년부터 적용된 새 규정들은 경작작물, 쇠고기, 우유, 포도주, 새로운 농촌개발 조치, 수평적 규정으로서 직접지불, CAP 자금 조달 등이다(우유는 제외). 올리브 기름과 담배 부문은 Agenda 2000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더해져 2001년부터 시행된다.

Agenda 2000은 가격보조(개입가격) 수준을 낮춤으로써 농정체제의 변모를 추구한다(European Commission 2001). 이에 따라 1992년과 1999년의 Agenda 2000에 의한 농업정책 개혁에 따라 경종작물의 가격보조 수준은 총 35% 감소하고 쇠고기의 경우 35% 감소하게 됐다.

또한 정책 수단이 가격보조와 수출보조 중심에서 직접지불과 농촌개발 위주로 전환되고, 정책 대상이 농산물에서 농민과 농촌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정책 수단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분명해진다<그림 1>. 1989-91년에 가격보조와 수출보조가 농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었으나, Agenda 2000의 마지막 해인 2006년에는 2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제한 아래의 직접지불(농촌개발 포함)의 경우, 같은 기간에 10%에서 79%로 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CAP 개혁의 결과 비교



2. 가격지지 및 직접지불

2.1. 경종작물

경종작물은 곡물·유지작물·단백질 작물(COPs)을 포함하며, COP 농산물이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EU 농업생산액의 11%를 차지한다. 또한 COP 부문은 EAGGF 예산의 42% 정도를 차지하고, 농경지 면적의 40% 정도를 사용한다.

시장개입 가격(가격보조)은 2001/02년(유통연도)까지 15%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개입 가격은 1999/2000년에 톤당 119.19 ECU에서 2001/2002년에 톤당 101.31 ECU로 줄고, 그 이후의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

라 결정된다. 계절 가격조정을 위해 11월부터 5월까지 월 톤당 1 ECU를 적용하게 된다.

곡물에 대한 직접지불은 가격보조 감축분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늘리며, 직접지불액은 기준단가(1999년 톤당 54 ECU)에 역사적 기준단수를 곱해 결정한다. 기준단가는 2001/02년까지 톤당 63 ECU로 증가할 것이며, 지역의 기준단수가 증가한 회원국들은 스페인 ha당 2.9톤, 이탈리아 3.9톤이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극지역은 추가로 톤당 19 ECU가 지불된다.

휴경에 대한 보상은 모든 경종작물에 대해 2001/02년부터 톤당 63 ECU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강제적 휴경의 기준율은 17.5%에서 10%로 줄은 채로 2006/07년까지 지탱되지만, 실제 적용률은 시장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자발적인 휴경도 지탱되지만, 환경사항을 고려해 개선될 것이다.

2.2. 쇠고기부문

쇠고기 부문은 농업 생산액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연간 도축량은 주로 광우병(BSE) 탓에 1995년 810만 톤에서 1998년 760만 톤으로 줄었고, 최대 생산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으로 총 생산량의 2/3 가량을 차지한다. 수출량은 1998년에 77만 톤이고 수입량은 45만 톤 정도이며, 쇠고기 소비량은 1998년에 740만 톤에 이른다.

시장보조는 톤당 2,780 ECU에서 20% 감소한다. 2002년 7월부터 개입가격은 민간비축량에 대한 기본가격으로 대체되는데 기본가격은 톤당 2,224 ECU로 고정될 것이다. 안전망 개입체제가 새롭게 설정됐는데, 회원국에서 황소나 수송아지의 가격이 톤당 1,560 ECU보다 낮은 경우 수매 입찰을 할 수 있다.

직접지불로서 수컷 가축과 암송아지에 대한 특별 프리미엄을 높이고, 농민에게 지불하는 도축 프리미엄을 도입했다<표 1>. 수컷 가축에 대한

표 1 쇠고기 프리미엄

단위: ECU/두

연도	수컷 가축 특별 프리미엄 (male animals)		경산우 프리미엄 (suckler cow)	도축 프리미엄 (slaughter)	
	수소 (bull)	거세한 중소 (steer)		수소, 거세한 중소, 암소, 미경산우(heifer)	송아지
2000	160	122	163	27	17
2001	185	136	182	53	33
2002~	210	150	200	80	50

자료: European Commission(<http://www.europa.org>)

특별 프리미엄은 수소에 대해 한번, 거세한 수소에 대해서는 두 번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두 그룹의 특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최소 나이는 9개월 (또는 도축시 지불할 때엔 도체 무게 185kg)과 21개월 이상이다. 회원국별 지원 가능한 두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경산우(suckler cow) 프리미엄은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두당 50 ECU를 지급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의 20%까지 같은 농가의 미경산우(heifer)에 대한 지급으로 재배정할 수 있다. 회원국별로 지원 가능한 두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도축 프리미엄은 8개월 이상인 수소, 거세한 중소, 젓소, 경산우, 미경산우와 1-7개월의 도체 중량 160kg 미만의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대상 두수는 1995년에 도축된 두수와 제3국으로 수출된 두수를 합한 것이 기준이다. 또한 도축 증명이나 수출 증명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특별프리미엄과 경산우 프리미엄의 자격요건은 ha 당 2 가축단위(livestock unit, LU)이며 회원국은 농가당 최대 특별 프리미엄이 90두가 기준이다. 특별 프리미엄과 경산우 프리미엄을 받는 생산자들은 조방화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사육밀도가 ha 당 1.4 가축단위(LU) 미만일 때 프리미엄 당 100 ECU가 적용된다<표 2>. 면적 기준은 사육지의 50% 이상이

표 2 사육 조방화에 대한 추가 지원

단위: ECU

기준(LU/ha)	2000~01년	2002년~
1.4~1.8	-	40
<1.4	-	80
1.6~2.0	33	-
<1.6	66	-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www.europa.org>)

초지라야 한다. 단, 50% 이상의 우유가 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회원국의 경우에 조방화 프리미엄은 젖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3. 낙농부문

농업 생산액에서 우유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농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EU는 세계 최대 우유 수출국이다. 1998년에 총 우유 생산량은 1억 2,050만 톤이고 이 가운데 약 75%가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생산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낙농부문에 대한 개혁은 2005/06년까지 지연된 상태이다.

버터와 탈지분유의 개입가격은 2005/06년부터 15%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유 쿼터 체제는 2005년부터 2007/08년까지 개입가격 하락과 병행해 1.5% 증가시키기로 결정됐다. 만약 농가가 1년 동안 적어도 70% 정도의 배당 쿼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이를 다른 생산자에게 배분하거나 회원국 비축량에 복귀시키는 객관적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입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호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체제가 도입된다. 연간 농가당 받게될 낙농 프리미엄은 2005년 톤당 5.75 ECU, 2006년 11.49 ECU, 2007년 17.24 ECU에 이를 것이다.

3. 농촌개발과 환경정책

3.1. 원칙과 목적

농업정책의 두 번째 주축으로써 새롭게 규정된 농촌개발 정책(환경부문이 통합된 형태임)은 농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증진시켜 고용을 지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촌개발 정책의 원칙은, ①농촌의 유산을 보전하는 한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사회에 제공하는 농민에게 보상하고 ②농촌 서비스를 개발하고 농촌과 농촌의 유산을 보전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과 고용을 창출하도록 다양한 부문별 접근을 시도하며, ③전략적이고 통합된 프로그램과 단순화로서 투명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연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Regulation (EC) No 1257/99)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은 농촌개발의 목적을 제시했다. ①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위한 농업 보유물의 개선, ②농업생산의 전환과 재조정, 새로운 기술 도입, 품질 향상, ③식량 이외의 생산 장려, ④지속 가능한 삼림 개발, ⑤보완과 대체활동을 위한 분산화, ⑥농촌지역에서 활기찬 사회조직 지탱과 시행, ⑦경제활동의 개발과 고용의 지탱 및 창출, ⑧영농과 생활여건 개선, ⑨저투입 영농체제의 지탱과 촉진, ⑩자연 가치의 보전과 촉진 및 환경요건을 존중한 지속 가능한 농업, ⑪차별 제거와 남녀 동등기회 촉진 등이다.

3.2. 주요 정책 내용

농촌 개발과 환경 정책은 다양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농업 보유물에 대한 투자 지원이다. 투자 지원의 목적은 농업 보유물의 현대화와 능력을 개선하는 거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적절한 직업기술을 갖춰야 하고, 투자의 경제 효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환경과 위생 및

동물복지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교차 순응 조건도 따라야 한다. 총 지원액은 투자액의 최대 40%(조건불리지역은 50%), 후계자의 경우에 최대 45%(55%) 수준이다.

둘째, 농업 후계자에 대한 초기 투자 지원이다. 이는 젊은 영농인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다. 지원 대상 농업 후계자는 40세 미만의 호주로 처음으로 농업 보유물에 투자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일 지원액은 최대 25,000 ECU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이자보조이다.

셋째, 농산물의 품질과 환경에 친화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 조치이다. 이 조치는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산림 소유주나 관련자도 포함된다.

넷째, 조기 은퇴농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 수준은 양도 건당 연간 15,000 ECU이다. 그러나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 연간 지불액은 15,000 ECU의 상한 안에서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지원 기한은 양도 건당 15년(고용 노동자는 10년)이다. 지원 대상인 조기 은퇴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75세 이상의 기간까지 지불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조건불리지역과 환경규제 지역에 대해 보상이다. 조건불리지역의 정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산간지역, 농촌 보전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토지사용을 포기할 위험이 있는 조건이 나쁜 지역, 그밖에 특별히 불리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농지면적 기준으로 ha 당 25-200 ECU을 지원하는데, 지역 여건과 개발 목적, 그리고 지역조건이 불리한 정도와 생산 형태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다. 수혜 대상 농민은 일반적인 모범영농 방식(good farming practice)을 적용하고 최소한의 농지에서 5년 이상의 영농 경험을 가져야 한다. 토지사용에 대한 환경규제로 생기는 비용이나 소득 손실분에 대해서 ha 당 최대 200 ECU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지역이 회원국의 농경지 면적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을 수 없다.

여섯째, 농업환경 조치의 실천이다. 이 정책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사회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환경과 천연자원, 토양, 유전 다양성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경관과 시골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영농방식을 채택한 농민에게 지원한다. 계약에 참여하는 농민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범영농 방식 이상을 실천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소득 손실 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면, 단년생 작물의 경우 ha 당 600 ECU, 영년생 작물 900 ECU, 다른 용도의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450 ECU를 지원한다.

일곱째,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농산물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가공 및 유통 개선을 촉진하면서 기본적인 농업생산 부문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보조이다. 총 지원액은 제1목표지역(Objective 1 region)의 경우 투자액의 최대 50%이고, 나머지 지역은 최대 40%이다. 소매 수준의 투자와 수입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대한 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덟째, 산림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농촌에서 산림의 사회, 생태, 사회 기능을 지탱하고 개발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간림과 사유림에 한해 ha 당 40-120 ECU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림화, 산림의 가치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투자, 수확·가공·유통의 개선 및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투자, 새로운 판로 촉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는 산주협회의 조직,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산림의 복구와 예방수단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농촌지역의 적응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에는 토지개선, 토지 재구획, 농가 구제 및 농장관리 서비스의 시작,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농촌경제와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마을의 혁신과 개발 및 농촌유산의 보호와 보전, 농촌활동 및 관련 활동의 다각화, 농업

용수 관리, 하부구조 개발과 개선, 농촌여행 촉진, 환경보전, 자연재해로부터 손상된 농업생산 복구 및 예방수단 도입, 금융 처리 등이 포함된다.

농업 예산 측면에서 조기 은퇴농,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규제 지역, 농업 환경조치, 조림화 등은 EAGGF 보증부문(Guarantee Section)에 의해 지원된다. 그 밖의 다른 조치들은 제1목표지역의 경우에 EAGGF 지도부문(Guidance Section)에서 지원하고 그 밖의 지역에 경우에는 보증부문에 의해 지원된다.

환경을 농업정책에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EU 회원국들은 농지 여건이나 생산과 관련된 적절한 환경조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①농업환경 책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보조, ②일반적인 강제적 환경 요건, ③직접지불의 조건으로 구성된 특별한 환경 요건 등이다. 이와 같은 환경 요건을 위반한 경우, 회원국들은 적절하고 위반에 비례하는 만큼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직접지불을 수준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농업고용 여건을 안정시키고 농업 보유물의 개발을 위해 회원국들은 직접지불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 그 지급 수준은 축소될 수도 있는데, ①농업 보유물과 연계한 노동력이 지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농업 보유물의 증진이 기준 이상으로 지정 수준을 넘거나, ③보조 조치아래 지불 규모가 지정 수준을 넘을 경우이다. 그러나 지급 수준의 감축은 해당 농민에게 지급되는 총 보조액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새 규정을 기초로 회원국들은 위 감축된 지급 수준을 활용해 농업환경 조치, 조기 은퇴, 조건불리 지역과 환경규제 지역, 산림과 같은 부문에 다시 배정 할 수 있다.

(임송수 songsoo@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U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증가

유럽 연합 통계청(Eurostat)이 최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01년도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2.7% 증가했으며, 유럽 지역(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의 농업소득은 2.4% 증가하였다.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증가한 원인은 실질농업소득이 1.1% 증가하고, 농업 노동투입량이 1.6% 꾸준히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다.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변화에 관한 잠정치는 회원국간에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0.8%), 룩셈부르크(-2.4%)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덴마크의 경우 +12.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포르투갈 +9.5%, 오스트리아 +8.5%, 아일랜드 7.3%, 벨기에 +6.2%, 독일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EU 15개국의 2001년도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총 실질농업생산액의 증가(+0.2%)

둘째, 투입량 감소(-1.0%)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1.2%)으로 인한 투입재 비용 증가(+0.2%)

셋째, 불특정품목(non product-specific) 실질 보조액의 증가(+9.7%)와 불특정품목 실질 조세의 감소(-0.8%) 및 실질 감가상각액 증가(+0.2%)

넷째, 꾸준한 노동투입량의 감소(-1.6%)

표 1 EU 2001년도 1인당 농업소득 변화

1995=100

국가	전년 대비 변화율(%)	2001년 지수	국가	전년 대비 변화율(%)	2001년 지수
EU-15	+2.7	106.6	영국	+4.3	58.4
유럽지역	+2.4	111.8	핀란드	+3.0	106.6
덴마크	+12.5	100.2	스웨덴	+2.8	110.5
포르투갈	+9.5	117.0	스페인	+2.7	122.8
오스트리아	+8.5	86.5	그리스	+1.4	96.4
아일랜드	+7.3	97.8	프랑스	+0.8	106.6
벨기에	+6.2	109.5	이탈리아	-0.8	112.6
독일	+5.7	128.8	룩셈부르크	-2.4	93.9
네덜란드	+4.3	83.7			

자료: Eurostat news release, 2001. 12.

2001년도 실질농업총생산액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에 대한 가축과 작물생산의 기여도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가축과 축산물의 실질생산액이 각각 2.4%, 3.7% 증가한 반면, 작물의 실질생산액은 1.8% 감소하였다.

작물의 실질생산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곡물의 생산액 감소(-7.5%)와 포도주의 생산액 감소(-5.9%) 및 실질생산자가격의 감소(-3.5%)에 있으며, 가축의 평균생산액이 증가한 원인은 소·양·염소의 생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실질생산자 가격이 무려 16.4%나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축산물의 생산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우유의 실질생산자 가격이 4.0%나 증가한 데에 있다.

모든 회원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과 주로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은 소 생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2001년도 EU 15개국 소의 실질가격과 생산량이 각각 13.2%, 1.5% 감소했으며, 양과 염소의 생산량은 5.2% 감소하였다.

투입재의 실질비용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데 그치고 있다. 가축사료와 비료의 실질 가격이 각각 2.2%, 10.3% 증가함에 따라서 중간 투입재의 평균 실질 가격이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각각 6.3%, 5.8% 감소함에 따라서 평균 투입량은 1.0% 감소하였다.

자료: Eurostat news release(No 131/2001), 2001. 12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국제기구 논의동향

대만의 WTO 가입과 농업문제

대만의 WTO 가입과 농업문제

1. WTO 가입

대만은 2002년 1월 1일자로 WTO에 가입하였다. 1990년 가입신청을 한 이후, 그 동안 가맹국과 양자간 협상을 완료하고, 또 1999년 5월까지 WTO 작업반회의에서 대만의 가입조건에 관한 다자간 교섭도 거의 완료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가입협상 지연에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가입이 실현되지 않았다.

WTO 작업반회의에서 2001년 9월 18일 가입합의를 받아 11월 11일 카타르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보다 1일 늦게 가입의정서가 승인되었다. 그 후 11월 16일 가입의정서를 대만 입법원에서 비준을 받아, 이를 12월 2일 WTO 사무국에서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된 2002년 1월 1일자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2. 가입조건

대만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선진국 대우를 받아 농림수산분야에서의 관세인하 및 쌀의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비해 대폭 개방하게 되었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 의하면, 대만의 WTO 가입후 많은 농업인이 경쟁력을 잃고 전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추계에 의하면, WTO 가입후 최초 3년간은 매년 2~3만명의 농업인이 전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 위원회에 의하면 전업을 강행하고 있는 농업인의 다수는 보증가격 등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를 받아 온 농업인이라고 한다. 대만이 WTO에 가입하면 담배와 주류시장을 개방하게 되며, 제당회사도 계약재배면적을 대폭 줄이게 된다. 더욱이 보증가격으로 보호되고 있는 바나나는 필리핀과 경쟁을 하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잎담배, 바나나, 사탕수수 등의 품목에서 전업하는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 가입후 가장 민감한 농산물과 일부 축산물은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농산물은 개방되기 때문에 농가의 전업문제는 잎담배, 바나나, 사탕수수농가만이 아니라 모든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에 이르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 가장 안정되어 있던 쌀 농가에도 미치게 된다.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의 특례조치를 적용한다. 그 동안 수량 설정을 둘러싸고 가입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2002년도 수입량은 국내 수요량의 8%에 상당하는 14만 4,720톤을 수입하게 된다. 대만은 한국, 일본 등과 같이 최근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국내 수요량의 8%를 수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생산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동시에, 쌀 가격하락 등 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농업위원회는 전업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업하는 농가가 실업자화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촌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조시설, 관광농원, 유통과의 일체화, 그린투어리즘 등에 의한 농업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업률이 5%를 상회하고, 마이너스 성장인 대만 경

제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 고용대책이 될 것인가는 불투명하다.

현재, 수입할당제도 등에 의해 수입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 또는 관세할당제도로 이행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1. 쌀은 관세화 특례조치 적용

대만은 쌀 수입에 대해 관세화 특례조치(MMA)를 적용하며, MMA 수량은 2002년에 14만 4,720톤으로 하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뉴라운드 농업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접근기회는 관세할당으로 설정하고, 할당내 세율은 제로로 하고 있다.

수입체제는 국영무역을 계속 유지하며, 신규로 농가에 의한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무역의 범위는 할당수량의 35%로 하고, 마크업은 상한(쌀 23.26元/kg, 가공품 25.59元/kg)을 설정하고,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한을 3元 이상 인하하기로 약속하였다.

2.2. 기타 수입제한 품목

쌀 이외의 수입제한 품목은 관세할당 또는 자유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3.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

대만은 WTO 정식 회원국이 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WTO 가입후 국제적으로 승인된 수입규칙체계를 도입할 전망이며, 그 중에는 쌀은 수입제한 조치, 22개 품목의 농산물은 관세할당제도(acustoms quota system), 그리고 신축적 수입관세제도(a system of flexible import duties)를 포함하고있다.

표 1 WTO 가입후 관세할당으로 이행하는 품목

품 목	할당내 세율				할당외 세율	
	가입연차		2004년		가입연차	2004
	접근물량 (톤)	적용세율	접근물량 (톤)	적용세율		
낙화생	2,618	25%	5,235	25%	껍질안간 것:49元/kg 껍질간것:75元/kg 낙화생유: 398%	42元/kg 64元/kg 338%
동양배	4,900	18%	9,800	18%	58元/kg	49元/kg
설탕	120,000	12.5~17.5%	205,000	12.5~17.5%	168%	143%
마늘	1,844	종묘용 0% 식용 22.5%	3,520	0% 22.5%	0% 32元/kg	0% 27元/kg
팽귤	4,412	17.5%	8,824	17.5%	950元/kg	810元/kg
닭고기	19,163	25%	45,990	20%	다리,가슴날개64元/kg 기타 40元/kg	54元/kg 34元/kg
쇠고기	10,649	15%	21,298	15%	18.4元/kg	15.6元/kg
동물내장	돼지내장 10,000	25%	27,500	15%	310%	256%
	닭내장 1,836.3	25%	3,672.6	25%	400%	340%
돼지안심	6,610	15%	15,400	12.5%	60%	50%
녹각	1.5	22.5%	5	22.5%	800%	500%
팥	1,500	22.5%	2,500	22.5%	26~27元/kg	22元/kg
건표고	115	110元/kg 또는 25%	288	110元/kg 또는 25%	434元/kg	369元/kg
야자	1,720	25%	4,300	25%	216%	184%
건조 감귤류	110	15%	330	15%	103元/kg	88元/kg
야자	8,000	0.9元/kg 또는 15%	10,000	0.9元/kg 또는 15%	161%	120%
바나나	5,335	12.5%	13,338	12.5%	134%	100%
파인애플	9,548	15%	23,870	15%	204%	173%
망고	5,120	25%	12,755	25%	71%	60%
감	576	25%	1,440	25%	144%	122%
백합근	40	22.5%	101	22.5%	68元/kg	58元/kg
고등어	4,522.5	6.2元/kg 또는 20%	7,537.5	6.2元/kg 또는 20%	101%	86%
전갱이	1,308	25%	3,271	25%	106%	90%
정어리	1,906.5	38.1元/kg 또는 20%	3,813	38.1元/kg 또는 20%	70%	60%

자료: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주: 상기품목 중 닭고기, 돼지내장, 돼지안심은 2005년 1월, 감, 고등어, 전갱이 및 정어리는 가입후 6년에 각각 관세할당제를 폐지한다. 또 설탕은 국영무역으로 하되, 일부를 민간에게 할당한다.

표 2 WTO 가입후 관세화하는 품목

품 목	현행세율	WTO 가입후 세율	
		가입연차	2002
감귤류	10%	20%	17%
레이시	10%	20%	17%
감자	25%, 15%	22.5%, 0%	20%, 0%
오렌지	50%(3~9월 25%)	40%(25%)	30% (20%)
레몬	50%(1~9월 25%)	40%(20%)	30% (15%)
그рей프 후르츠	50%(1~9월 25%)	40%(20%)	30% (15%)
포도	42.5%	35%	20%
복숭아	50%	40%	20%
자두	35%	35%	20%
사과	50%	40%	20%
파파야	50%	35%	25%
기타 중국감귤	50%	40%	30% 또는 35%
기타 감귤	50%	42.5%	42.5%
오리고기	35 또는 40%	35 또는 40%	35 또는 40%
생오리	35 또는 40%	35 또는 40%	30 또는 34%
칠면조	10%, 10%, 20%	10%, 10%, 20%	10%, 8.5%, 15%
구아바	50%	40%	35%
오징어	42.5%, 15元/kg, 219元/kg 또는 50%	40%, 15元/kg, 219元/kg 또는 50%	40%, 15元/kg, 219元/kg 또는 50%

자료: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대만은 2002년 1월 WTO 가입후 농산물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결정하였다. 현재 대만 정부도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부문에 2,900만 US달러의 긴급원조자금을 할당하고 있다. 대만은 WTO 가입직후인 최초 1년간에 농산물의 수입관세율을 현행 22.02%에서 14.01%로 인하하고, 더욱이 2004년에는 13.33%까지 인하해야 한다.

향후 대만의 2001년도 농업총생산액은 2000년대비 6.8%(7억 1,700만 US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농산물은 7.1%(3억 4,300만 US달러) 감소, 축산물은 8.1%(2억 5,300만 US달러) 감소, 수산물은 4.6%(1억 1,900만 US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2004년까지 농산물 총생산액은 10.2% 감소, 축산물은 16.5% 감소, 수산물은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대만 정부는 WTO 가입후 1년간 대만의 농지이용면적이 5만 3,000ha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이 2004년까지 농지이용면적은 8만 6,000ha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002년에는 WTO 가입으로 농업관련 1만 8,000~2만 7,000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누적 실업자수는 2만~4만 6,000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농업위원회는 WTO 가입후 새로운 상황에서 농가의 대응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향후 2개월간에 약 150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8~9월에 농업위원회는 같은 취지의 세미나를 32회 개최한 바 있다. 동시에 농업위원회는 농가지원대책으로 전직지원, 생물공학의 노하우를 포함한 농업기술 향상, 농업기관의 설립에 의한 수출경쟁력 향상, 보다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 개발 등을 비롯한 정책을 추진해 갈 방침이다.

資料: <http://www.maff.go.jp>, JETRO, Food&Agriculture, no.2360(2001. 10.29)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농산물무역 정보

호주 돈육업계 수출확대 도모
브라질 2001년 농산물수출 대폭 증가

호주 돈육업계 수출확대 도모

1. 연간 수출액 2억 호주달러 돌파 기대

호주의 돈육 주요 3단체가 2001년 7월 호주 포크 리미티드(APL)로 통합되었다. APL이 지난 11월 19일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 석상에서 호주 돈육산업은 90년대 후반이후 중요한 구조변화가 상당히 양호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고 총괄한 후, 2001년 돈육수출은 양호한 상태로 추이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나 일본으로 수출이 늘어나 연간 수출액이 2억 호주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다른 나라 가축질병의 영향으로 시장확대

호주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 돈육 수출은 9월까지 수출량이 약 4만 1,000톤, 수출액이 1억 7,700만 호주달러(이하 동일)에 달하고 있다. 이미 금액기준에서는 1999년 및 2000년 수준을 상회하고(1999년은 약 3만 2,000톤, 약 1억 3,000만 달러, 2000년은 4만 2,000톤, 약 1억 6,800만 달러) 있기 때문에 2억 달러 돌파는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PL은 호주 돈육산업에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전략으로서 사료가격과 생산비동향 주시, 수출시장 확대, 가축위생관리, 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포크 세이프(Pork Safe)라고 불리는 돈육산업의 새로운 위기관리계획을 강구, 예측하지 못한 가축질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돼지의 정액 수입금지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APL은 호주 돈육산업 성장의 한 요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의 발생을 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교훈을 배워 효과적으로 위기의 방지·준비·관리계획을 정비해 둔 것에 있다고 한다.

더욱이 수출시장에 관한 전략의 하나로서 가축질병의 위험이 낮은 호주산 돈육이 시장에 출하되는 계기로 삼고, 특히 일본 수출에 대해 향후 3년 간에 적어도 5배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APL은 일본은 연간 호주 생산량을 대폭 상회하는 돈육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과제로 들고 있다.

3. 국내시장 출하제품의 품질저하가 우려

한편, 총회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수출확대전략에만 중점으로 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주로 베이컨용으로 이용되는 거세되지 않은 돼지가 최근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품질이 열악한 것이 국내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 소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호주산 본래의 지방이 적고 싼 가격을 목표로 한 장기간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실망감이 있다는 것이다.

수출 확대에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의 돈육업계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생산 확대, 또 국내시장에 대한 제품공급 균형 유지 등 과제가 많다.

資料: <http://www.lim.go.jp/alic/month/fore/2002/jan/top-sd0.3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브라질 2001년 농산물수출 대폭 증가

1. 1차 상품의 수출액이 대폭 증가

브라질의 개발상공부 무역국이 발표한 무역동향에 의하면, 브라질의 2001년 1~10월의 농산물 수출액(FOB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한 133억 달러인 반면, 전체 수출액의 약 7할을 차지하는 공업제품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345억 달러에 그쳤다.

대두, 대두박, 옥수수,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농산물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증가요인은 ①금년 곡물 및 유지종자의 기록적인 증산, ②브라질 통화 레아르가 하락하는 환율동향, ③EU에서 광우병(BSE) 및 구제역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 곡물부문은 대두, 옥수수가 대폭 증가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두는 25.9% 증가한 26억 5천만 달러이며,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 수출량은 37.8% 증가한 1,526만 톤이 되었다. 증가요인은 금년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15.1% 증가한 3,722만 톤이 된 것, 중국 및 EU로의 수출이 확대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두박은 동물성 사료의 대체로서의 수요증가 등으로 수출량이 19.8% 증가한 953만

톤, 수출액이 25.6% 증가한 17억 4,000만 달러였다.

종래 수입품목이었던 옥수수는 2001년도 생산량이 전년대비 31.3% 증가한 4,154만톤으로 늘어나 수출량이 약 745배인 432만톤, 수출액이 약 48배인 3억 8,000만 달러였다. 그러나 내년은 감산이 전망되기 때문에 잉여 옥수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모두 증가

축산부문에서는 돼지고기의 수출량이 약 2.2배인 20만 4,000톤, 수출액이 약 2.3배인 2억 9,000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중서부에서 투자 확대, 남부에서 생산성 향상 등으로 돈육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등에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닭고기는 EU에서 광우병 문제의 영향으로 쇠고기에 대체하여 수요가 증가한 것 등에서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출량은 35.8% 증가한 103만톤으로 100만톤대를 돌파하였다. 수출액은 60.8% 증가한 10억 8,000만 달러였다.

쇠고기 수출량은 87.2% 증가한 29만 5,000톤, 수출액은 43.6% 증가한 6억 600만 달러였다. 미국, EU 등의 공급량이 감소한 것에 반하여 브라질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수출 증가의 원인이다.

4. 7년만의 무역흑자 전망

또,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의 불안요인이던 리오그란데도슬(RS)주에서의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는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의 주요 수출지역인 EU는 2001년 5월 RS주의 구제역 재발후 RS산 신선육 수입을 정지하고 있었지만, 브라질 농업부는 2001년 11월 21일 EU 상설수의위원회가 동 주산 뼈없는 숙성쇠고기에 대해 EU의 수입정지조치를 해제한다는 뜻을 브라질 정부에 통보하여 12월 1일부터 대 EU 수출이 재개되었다.

농산물 수출증대 등에 의해 2001년 1~10월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한 494억 달러, 전체 수입액은 4.3% 증가한 479억 달러였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15억 달러의 흑자가 되었다. 이런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2001년의 무역수지는 1994년 이래 7년만의 무역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資料: <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2/jan/top-sa02.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2. 1)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2. 1)

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전체 곡물

2001/02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8억 4,1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638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쌀,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은 전년 수준은 줄어들지만, 보리, 호밀, 수수 등 기타 잡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8,987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3,148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2,682만 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로는 1.1% 감소한 수준이지만, 전월대비로는 0.1% 증가한 수준이다.

2001/02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18억 9,62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소비량이 늘어나 2001/02년도에는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1.02	1,835.22	1,843.02	1,841.60	0.3	△0.1
공 급 량	2,394.91	2,358.30	2,330.29	2,331.48	△1.1	0.1
소 비 량	1,871.83	1,868.42	1,893.84	1,896.28	1.0	△0.4
교 역 량	281.50	271.38	266.59	267.27	△1.5	0.3
기말재고량	523.1	489.87	436.45	445.19	△9.1	2.0
기말재고율	27.9	26.2	23.0	23.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2.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 대비 1.5% 줄어든 2억 6,72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5,5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9.1% 감소한 4억 4,519만 톤 정도로 전월 전망치 보다도 2.0% 증가한 수준이다. 기말재고율도 2000/01년도 26.2%에서 23.6%로 2.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2. 쌀

2001/02년도 쌀 생산량은 2000/01년 보다 1.1% 줄어든 3억 9,261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쌀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중국과 일본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3% 늘어난 4억 42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20만 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 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08.45	396.99	392.82	392.61	△1.1	△0.1
공 급 량	541.52	540.00	530.13	529.62	△1.9	△0.1
소 비 량	398.50	403.00	404.38	404.20	0.3	0.0
교 역 량	24.09	25.02	23.47	23.40	△6.5	△0.3
기말재고량	143.01	137.01	125.75	125.42	△8.5	△0.2
기말재고율	35.9	34.0	31.1	31.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2.

2001/02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6.5% 줄어든 2,34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전망된다. 수출량은 타이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700만 톤 수준이나 베트남은 11.1% 증가한 400만 톤, 미국도 약간 늘어난 271만 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8.5%가 줄어든 1억 2,542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재고량은 늘어나지만 타이,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말재고율은 31.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이 세계 쌀 재고량의 약 67.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소맥

세계 밀 생산량은 2000/01년 5억 8,222만 톤에서 2001/02년에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5억 7,84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러시아를 제

외한 미국, 캐나다, 중국, 유럽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1/02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0/01년 5억 8,897만톤보다 약 10만 톤 감소한 5억 8,88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3,499만톤까지 늘어났으나, 2000/01년에는 1억 2,665만 톤으로 줄어들었다가 2001/02년에는 다시 1억 2,9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2.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 소비량은 증가하나 생산량이 감소하여 기말재고량은 1억 5,343만 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밀 생산국인 미국, 중국, EU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7.8%에서 26.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2001/02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 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5.93	582.22	577.02	578.45	△0.6	0.2
공 급 량	762.02	752.82	740.02	742.30	△1.4	0.3
소 비 량	591.42	588.97	596.04	588.87	0.0	△1.2
교 역 량	134.99	126.65	129.13	129.98	2.6	0.7
기말재고량	170.60	163.85	143.98	153.43	△6.4	6.6
기말재고율	28.8	27.8	24.2	26.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2.

1.4. 옥수수

2001/0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8,340만 톤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하며, 전월 전망치보다는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의 생산량은 약간 늘어나지만 미국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1/02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6억 1,17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831만 톤 정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교역량의 경우 전년보다 8.9% 감소한 7,797만 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4.4%, 10.9%로 이들 두 국가가 7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8.4% 줄어든 1억 2,545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2,831만 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기말재고량은 약간 늘어나지만 중국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 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약 5.0% 포인트 줄어든 20.5%가 될 전망이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 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7.07	585.41	586.06	583.40	△0.3	△0.5
공 급 량	776.19	756.91	738.49	737.16	△2.6	△0.2
소 비 량	604.70	603.15	612.45	611.71	1.4	△0.1
교 역 량	85.79	85.62	78.93	77.97	△8.9	△1.2
기말재고량	171.50	153.76	126.04	125.45	△18.4	△0.5
기말재고율	28.4	25.5	20.6	20.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2.

1.5. 대두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01/02년에 사상 최대인 1억 8,28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대두 생산국의 생산량이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5.7% 늘어난 1억 8,28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3만 톤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5,926만 톤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6.4%, 브라질이 30.4%, 아르헨티나가 14.8%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869만 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860만 톤과 비교하여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2001 (추정)	2001/2002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9.85	174.28	182.72	182.83	4.9	0.1
공 급 량	186.49	201.29	211.32	211.43	5.0	0.1
소 비 량	160.53	173.05	182.18	182.86	5.7	0.4
교 역 량	38.72	55.23	58.74	59.26	7.3	0.9
기말재고량	27.01	28.60	29.15	28.69	0.3	△1.6
기말재고율	16.8	16.5	16.0	15.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2.

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1. 쌀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 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1년 9월에는 톤당 253.5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1988년 UR 농산물협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1년 10월에는 톤당 314.16달러로 상승한 후 현재(1월 7일 기준)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10월에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일본이 최소시장접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중립종을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이었다.

타이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2년 1월(1월 7일 기준)에는 전년 대비 1.8% 하락한 톤당 175달러 수준이다. 이는 전년동월보다 8.1%, 전월보다도 2.3% 높은 수준이

다. 이러한 가격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쌀 소비량이 늘어나고 교역량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쌀 재고량이 충분하여 국제 쌀 가격은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 소맥

밀의 국제 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에는 153.1달러로 하락하였다. 가격 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달러로 더욱 하락하였다.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2년 1월(1월 7일 기준) 현재에는 137.79달러로 이는 전년보다 8.6%, 전년동월보다 21.0% 높으나, 전월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현재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량과 교역량이 늘어나서, 앞으로 국제 가격은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옥수수

1996년 5월 톤당 209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 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1월(1월 7일 기준) 현재 톤당 89.96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 전년동월 대비 5.3%, 전월대비

5.2% 하락하였다.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국제 가격은 이 수준에서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대두

대두 국제 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급,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국제 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달러까지 하락하다가 12월에는 196.98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2년 1월(1월 7일 기준) 현재에는 168.65달러로 전년 대비 6.1%, 전년동월 대비 9.5%, 전월보다는 1.5% 하락한 수준이다.

2001/02년도에는 생산량, 소비량과 교역량이 늘어나지만 기말재고량도 약간 늘어나고, 대두의 국제 가격은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2001 평균	2001.1	2001.12	2002.1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중립종)	294.34	340.08	314.16	314.16	6.7	△7.6	0.0
쌀(장립종)	178.13	190.33	171.00	175.00	△1.8	△8.1	2.3
소 맥	126.91	113.89	138.73	137.79	8.6	21.0	△0.7
옥수수	91.45	95.00	91.04	89.96	△1.6	△5.3	△1.2
대 두	179.67	186.43	171.28	168.65	△6.1	△9.5	△1.5

주: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타이 1등급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표 7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1.52	540.00	530.13	529.62	△1.9	△0.1
기초재고량	133.07	143.01	137.31	137.01	△4.2	△0.2
생산량	408.45	396.99	392.82	392.61	△1.1	△0.1
미국	6.50	5.94	6.56	6.57	10.6	0.2
태국	16.50	16.83	16.83	16.83	0.0	0.0
베트남	20.93	20.47	20.60	20.60	0.6	0.0
인도네시아	33.45	32.00	32.50	32.50	1.6	0.0
중국	138.94	131.54	126.70	126.70	△3.7	0.0
일본	8.35	8.64	8.25	8.25	△4.5	0.0
수입량	21.24	21.94	23.14	23.15	5.5	0.0
인도네시아	1.50	1.30	1.60	1.60	23.1	0.0
중국	0.28	0.23	0.31	0.31	34.8	0.0
일본	0.64	0.73	0.70	0.70	△4.1	0.0
소비량	398.50	403.00	404.38	404.20	0.3	0.0
미국	3.85	3.67	3.79	3.78	3.0	△0.3
태국	9.60	9.99	10.00	10.05	0.6	0.5
베트남	16.77	16.96	17.10	17.10	0.8	0.0
인도네시아	35.40	35.88	36.36	36.36	1.3	0.0
중국	133.76	134.34	134.61	134.61	0.2	0.0
일본	9.45	9.30	9.30	9.30	0.0	0.0
수출량	24.09	25.02	23.47	23.40	△6.5	△0.3
미국	2.80	2.60	2.69	2.71	4.2	0.7
태국	6.55	7.50	7.00	7.00	△6.7	0.0
베트남	3.37	3.60	4.00	4.00	11.1	0.0
기말재고량	143.01	137.01	125.75	125.42	△8.5	△0.3
미국	0.87	0.89	1.32	1.31	47.2	△0.8
태국	1.41	0.75	0.88	0.53	△29.3	△39.8
인도네시아	6.37	3.80	1.54	1.54	△59.5	0.0
중국	98.50	94.23	84.53	85.12	△9.7	△0.7
일본	1.83	1.30	0.80	0.80	△38.5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2.

표 8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62.02	752.82	740.02	742.30	△1.4	0.3
기초재고량	175.09	170.60	163.00	163.85	△4.0	0.5
생산량	585.93	582.22	577.02	578.45	△0.6	0.2
미국	62.57	60.76	53.28	53.28	△12.3	0.0
호주	24.76	23.77	22.00	22.00	△7.4	0.0
캐나다	26.90	26.80	21.30	21.30	△20.5	0.0
EU15	96.77	105.31	91.91	92.16	△12.5	0.3
중국	113.88	99.64	94.00	94.00	△5.7	0.0
러시아	31.00	34.45	44.50	47.00	36.4	3.3
수입량	130.10	125.89	127.12	127.71	1.4	0.5
EU15	25.09	26.72	27.13	27.13	1.5	0.0
브라질	7.56	7.20	6.50	6.50	△9.7	0.0
북아프리카	16.61	18.25	16.00	16.20	△11.2	1.3
파키스탄	2.10	0.15	0.50	0.50	233.3	0.0
인도	1.37	0.05	0.10	0.10	100.0	0.0
러시아	5.08	1.50	1.00	1.00	△33.3	0.0
소비량	591.42	588.97	596.04	588.87	0.0	△1.2
미국	35.38	36.32	33.67	34.24	△5.7	1.7
EU15	87.16	91.96	89.27	89.29	△2.9	0.0
중국	115.62	114.00	113.50	113.50	△0.4	0.0
파키스탄	20.45	20.50	20.40	20.40	△0.5	0.0
러시아	35.37	35.05	37.50	37.50	7.0	0.0
수출량	134.99	126.65	129.13	129.98	2.6	0.7
미국	29.65	28.89	27.22	27.22	△5.8	0.0
캐나다	19.17	17.32	16.00	16.00	△7.6	0.0
EU15	38.34	38.81	33.70	33.80	△12.9	0.3
기말재고량	170.60	163.85	143.98	153.43	△6.4	6.6
미국	25.85	23.85	18.69	18.26	△23.4	△2.3
EU15	14.43	15.70	12.54	11.89	△24.3	△5.2
중국	65.16	50.48	31.98	31.48	△37.6	△1.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2.

표 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6.19	756.91	738.49	737.16	△2.6	△0.2
기초재고량	169.12	171.50	152.43	153.76	△10.3	0.9
생산량	607.07	585.41	586.06	583.40	△0.3	△0.5
미국	239.55	251.85	242.47	241.49	△4.1	△0.4
아르헨티나	17.20	15.50	12.50	11.50	△25.8	△8.0
EU15	37.17	38.29	38.76	38.86	1.5	0.3
멕시코	19.24	17.70	19.00	18.00	1.7	△5.3
동남아시아	14.61	14.77	14.98	14.98	1.4	0.0
중국	128.09	106.00	108.00	108.00	1.9	0.0
수입량	80.02	82.91	81.55	80.50	△2.9	△1.3
EU15	10.87	11.03	11.68	11.68	5.9	0.0
일본	16.12	16.34	15.50	15.50	△6.4	△1.3
멕시코	4.91	5.93	6.00	6.00	1.2	0.0
동남아시아	4.50	4.08	4.80	4.60	12.7	△4.2
한국	8.69	8.74	6.70	6.70	△23.3	0.0
소비량	604.70	603.15	612.45	611.71	1.4	△0.1
미국	192.48	198.21	198.89	200.54	1.2	0.8
EU15	38.68	40.06	41.25	41.25	3.0	0.0
일본	16.32	16.20	15.69	15.69	△4.4	△1.3
멕시코	23.66	24.00	25.00	24.10	0.4	△3.6
동남아시아	18.99	18.47	19.36	19.26	4.3	△0.5
한국	8.40	8.90	6.95	6.95	△21.9	0.0
중국	118.00	120.00	124.00	124.00	3.3	0.0
수출량	85.79	85.62	78.93	77.97	△8.9	△1.2
미국	49.21	49.21	52.07	50.17	2.0	△3.6
아르헨티나	11.96	10.50	9.00	8.50	△19.0	△5.6
중국	9.94	7.28	3.00	3.00	△58.8	0.0
기말재고량	171.50	153.76	126.04	125.45	△18.6	△0.5
미국	43.63	48.24	39.99	39.27	△18.6	△1.8
아르헨티나	0.45	0.46	0.47	0.47	2.2	0.0
EU15	4.11	4.70	4.47	4.47	△4.9	0.0
중국	102.31	81.08	63.09	63.08	△22.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2.

표 1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9/00	200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률(%)	
			2001.12	2002.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86.52	201.29	210.32	211.43	5.0	0.1
기초재고량	26.64	27.01	28.60	28.60	5.9	0.0
생산량	159.88	174.28	182.72	182.83	4.9	0.0
미국	72.22	75.06	79.55	78.75	4.8	△1.1
아르헨티나	21.20	27.20	28.75	28.75	5.7	0.0
브라질	34.20	38.80	41.50	42.50	9.5	2.4
중국	14.29	15.40	15.30	15.30	△0.6	0.0
수입량	47.72	55.59	58.64	59.24	6.6	1.0
EU15	15.66	18.83	19.58	19.65	4.4	0.4
일본	4.90	4.84	5.00	5.00	3.3	0.0
중국	10.10	13.24	14.00	14.00	5.7	0.0
소비량	160.56	173.06	182.18	182.86	5.7	0.4
미국	47.43	49.13	50.21	50.29	2.4	0.2
아르헨티나	18.02	18.48	20.53	20.53	11.1	0.0
브라질	23.19	24.75	25.50	25.50	3.0	0.0
EU15	15.66	18.76	19.63	19.70	5.0	0.4
일본	5.08	5.08	5.25	5.25	3.3	0.0
중국	22.90	26.70	29.70	29.70	11.2	0.0
수출량	46.67	55.22	58.74	59.26	7.3	0.9
미국	26.49	27.17	27.22	27.49	7.2	1.0
아르헨티나	4.13	7.45	9.00	8.75	17.4	△2.8
브라질	11.16	15.50	17.50	18.00	16.1	2.9
기말재고량	27.01	28.60	29.15	28.69	0.3	△1.6
미국	7.90	6.74	8.98	7.77	15.3	△13.5
아르헨티나	5.68	7.36	6.98	7.24	△1.6	3.7
브라질	7.65	7.10	6.50	7.00	△1.4	7.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82, Jan. 11, 2001.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M45-18 세계농업뉴스 제18호 (2002. 2)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2년 2월

발 행 2002년 2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